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한

무국적자의 보호에 관한 편람

제네바, 2014

(한글판, 서울, 2021. 12.)



© 2014 UNHCR.

All rights reserved for all countries.

비공식 국문 번역본입니다.

편람 본문 번역을 감수해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차

서문.....	1
도입.....	3
A. 1954년 무국적협약의 배경	3
B. 유엔난민기구와 무국적	3
C. 이 편람의 범위	4
D. 무국적과 사실상(<i>de facto</i>) 무국적	4
E. 무국적 심사.....	5
F. 무국적 지위.....	6
제1부 - 무국적 심사 기준	7
A. 정의	7
B. 일반적 고려사항.....	7
C. 용어의 해석	8
(1)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8
(a) 어느 국가를 조사해야 하는가?	8
(b) “국가”란 무엇인가?	8
(2)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9
(a) “법률”的 의미	9
(b) 국가의 법과 관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때는 언제인가?	9
(i) 자동적 및 비자동적 방식의 국적 취득 또는 상실	10
(ii) 관할 정부기관의 확인	10
(iii) 비자동적 국적 취득 및 상실에서 관할 정부기관의 증거 평가	11
(iv) 자동적 시민권 취득 혹은 국적 상실에서 관할 정부기관의 증거 평가	11
(v) 국가 관행이 자동적 국적 취득과 반대되는 경우의 고려사항	12
(vi) 관할 정부기관의 입장에 대한 증거 부재 시 국적 판정	12

(vii) 영사기관의 역할	13
(viii) 관할 정부기관에의 문의	13
(ix) 관할 정부기관의 비밀관적 처우	14
(x) 착오 또는 악의로 취득한 국적	14
(xi) 불복절차의 영향	15
(xii) 시점의 문제	15
(xiii) 자발적 국적 포기	16
(xiv) 국적의 개념	16
제2부 - 무국적 심사절차	18
A. 총론	18
(1) 개요	18
(2) 무국적 심사와 국적에 대한 권리	18
B. 심사절차의 수립	19
(1) 심사절차의 설계와 위치	19
(2) 절차에의 접근성	20
(3) 절차적 보장	20
C. 난민 지위와 무국적 심사의 조율	22
D. 증거의 평가	23
(1) 증거의 종류	23
(2) 증명의 문제	25
(3) 증명책임	25
(4) 증명기준	25
(5) 증거의 중요도	26
(6) 여권	26
(7)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문의와 답변	26
(8) 면접	27
(9) 신빙성 문제	27
E. 절차상의 추가적 고려사항	29
(1) 집단 심사	29
(2) 구금	30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31
(4) 해외에서의 해결책 모색	31
(5) 특정 집단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상 및 증거 관련 보호장치	32

F. 1954년 무국적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무국적 심사.....	32
 제3부 - 국내 차원에서 무국적자의 지위	34
A. 국제법과 무국적자의 지위.....	34
(1) 난민과 무국적자 지위의 유사성	34
(2) 1954년 무국적협약이 요구하는 처우 기준에 대한 개요	35
(a) 점진적, 조건적 척도에 따른 권리.....	35
(3) 국제인권법	38
B.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	39
(1) 무국적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	39
(2) 무국적자 인정을 받은 사람 - 거주의 권리	39
(3) 타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40
(a) 국적 상실/박탈이나 선의의 자발적 포기로 인한 무국적의 경우.....	41
(b) 편의상 또는 선택에 따른 자발적 국적 포기로 인한 무국적의 경우	42
(c) 지역적 유대관계에 대한 고려	43
C. “자국” 내에 있는 사람.....	43
D. 1954년 무국적협약이 다루지 않는 무국적자의 지위	44
 부록 I -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45
 부록 II -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60
 부록 III -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목록	67
 부록 IV - 유엔총회 결의안 발췌본.....	71
 부록 V -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발췌.....	73
 색인.....	76

서문

지난 십 년간, 무국적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유엔난민기구의 지지를 통해 국제 사회 내에서 재개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하듯이, 모든 사람은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국적이 없으면 개인의 불안정과 주변화로 점철된 삶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국적자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의 하나이며 법 앞에서의 평등, 근로권, 교육권, 건강권과 같은 권리의 향유를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국가가 무국적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국적법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새로운 무국적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국적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국제 체제의 핵심입니다. 이는 “무국적자”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확립하고 처우의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협약의 체계는 협약 챕터 당시만큼이나 오늘날도 유효하며 국제인권법의 발전으로 보완되어 왔습니다.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이 무국적 균절을 위한 표괄적 도구를 제시하는 반면, 1954년 무국적협약은 무국적 상태에 처하게 된 사람의 삶에 존엄성과 안전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협약 60주년을 맞아 이 편람을 발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유엔난민기구의 무국적 캠페인으로 많은 국가가 가입하여 이 편람 출판 시점 기준으로 80개국이 1954년 무국적협약 당사국입니다. 무국적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무국적 심사절차를 도입하는 국가 수 증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 세계 무국적자 중 아주 상황에 있는 소수에게만 적용할지 모르나, 그럼에도 1954년 무국적협약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위를 얻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국 내에 있는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출생이나 장기 거주 등을 통해 그가 해당 국가와 맺고 있는 깊은 유대관계를 인정하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됩니다. 각국은 당사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기 위한 법 및 정책 개정이 당사자뿐 아니라 자국 사회 전반의 안정과 결속을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점차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 문제 해결이라는 임무에 따라 이 편람을 발간합니다. 본래 유엔난민기구의 책임은 유엔난민기구 규정 제6조 제A항 제II호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서 규정한 난민인 무국적자들에게 국한되었습니다. 이후 일련의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임무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1995년 결의안 제50/152호와 2006년 제61/137호는 무국적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위임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책임은 무국적 확인, 방지, 감소와 무국적자 보호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편람의 내용은 무국적자의 정의, 무국적 심사절차, 국내법상 무국적자의 지위에 대한 3개의 개별

적 유엔난민기구 지침으로 2012년에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이 편람은 이 지침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내용은 그대로이며 최소한으로만 수정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복을 막고 유엔난민기구 출판물 참조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지침 발간 이후 확인된 사소한 문제들도 해결했습니다. 이 편람은 기존 지침과 마찬가지로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50주년을 맞아 수행한 일련의 전문가 협의의 결과로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무국적의 방지와 감소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대신 이 문제는 별도의 지침에서 다룹니다.

이 편람은 공무원, 판사, 법률가, 유엔난민기구 직원과 여타 무국적 문제에 관련된 사람을 위한 지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편람이 무국적 심사와 무국적자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볼커 터크(Volker Türk)

국제보호국장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2014년 6월

* 유엔난민기구, 무국적에 대한 지침 제1호: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항 “무국적자”에 대한 정의, 2012년 2월 20일, HCR/GS/12/01, <http://www.refworld.org/docid/4f4371b82.html>; 유엔난민기구, 무국적 지침 제2호: 무국적자 심사절차에 관한 지침, 2012년 4월 5일, HCR/GS/12/02, <http://www.refworld.org/docid/4f7dafb52.html>; 유엔난민기구, 무국적 지침 제3호: 국가 내에서 무국적자의 지위, 2012년 7월 17일, HCR/GS/12/03, <http://www.refworld.org/docid/5005520f2.html> 참조.

[†] 유엔난민기구, *Expert Meeting - The Concept of Stateless Persons under International Law (“Prato Conclusions”)* (전문가 회의 - 국제법상 무국적자의 개념 (“프라토 결정문”)), 2010년 5월, <http://www.refworld.org/docid/4ca1ae002.html>; 유엔난민기구, *Expert Meeting - Statelessness Determination Procedures and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Geneva Conclusions”)* (전문가 회의 - 무국적 심사절차와 무국적자의 지위 (“제네바 결정문”)), 2010년 12일, <http://www.refworld.org/docid/4d9022762.html> 참조.

도입

A. 1954년 무국적협약의 배경

1. 무국적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주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로는 상주국의 국적 미취득 상태에서 본래 국적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는 국외거주자와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국적자는 한 번도 국경을 넘어본 적 없이 “자국”¹ 내에 머무른다. 이러한 사람들의 곤경은 원래 살던 곳에서(*in situ*), 즉, 장기 거주한 국가에서, 많은 경우 본인의 출생국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개인의 경우 국적법의 형성과 이행상의 문제가 무국적이라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국적자와 난민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행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4년 무국적협약”)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난민협약”)과 그 기원을 같이한다. 무국적협약은 처음에는 난민협약의 의정서 초안으로 구상되었으나, 1951년 난민협약 채택 시 이 의정서는 초안으로 남겨졌고, 별도의 협상 회의에 회부되어 무국적자에 관한 독자적인 조약으로 변경되었다. 1954년 무국적협약 본문과 당사국 목록은 각각 부록 I, III에서 찾을 수 있다.
3. 1954년 무국적협약은 무국적자의 처우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는 유일한 국제 조약이며,² 따라서 해당 취약집단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B. 유엔난민기구와 무국적

4.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 문제 해결이라는 임무에 따라 이 편람을 발행한다. 본래 유엔난민기구의 책임은 유엔난민기구 규정 제6조 제A항 제II호와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인 무국적자들에게 국한된 것이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지위에서 1954년 무국적협약의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1961년 무국적감소협약”) 제11조와 제20조에서 예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74년 유엔총회 결의안 제3274호(XXIX)와 1976년 제31/36호에 따라 유엔난민기구의 임무는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이 적용되는 개인을 포함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78호를 승인한 1995년 유엔총회 결의안 제50/152호에 따라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반적으로 위임받았다. 이어서 유엔총회는 2006년 결의안 제61/137호를 통해, 유엔난민기구의 책임을 크게 무국적의 확인, 방지, 감소와 무국적자 보호의 4개 분야로 규정한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106호를 승인했다. 관련한 총회 결의안과 집행위원회

¹ “자국(own country)”이라는 문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2조 제4항에서 차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해석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²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은 기본적으로 국적법 내 보호장치를 통해 무국적을 피하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국적 현상의 감소를 꾀한다. 2004년 발효된 1930년 무국적에 관한 특별의정서는 처우 기준을 다루지는 않으나 종전의 국적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매우 적다.

결정문 발췌본은 각각 부록 IV과 V에서 찾을 수 있다.

C. 이 편람의 범위

5. 1954년 무국적협약의 조항은 3개의 범주로 나뉜다. “무국적자”를 정의하는 부분, 무국적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부분, 그리고 협약의 가입과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당사국의 협조 등의 문제를 다루는 최종조항이 그것이다. 이 편람은 이 중 앞의 두 범주에 속하는 조항에 대해 지침을 제시한다.
6. 이 편람은 정부, 정책입안자, 행정심판관, 사법부, 비정부기구, 법률가, 유엔난민기구 직원 및 여타 관계자들이 1954년 무국적협약의 당사자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돋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더해, “무국적자”, “무국적”, 혹은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의는 제시하지 않는 다른 국제문서의 해석 등 여타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 편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1954년 무국적협약은 아직 1951년 난민협약 및 기타 인권조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준/가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1954년 무국적협약의 적용, 특히 제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된 국내법원 판례 등 국가 관행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람의 지침은 1954년 현존하는 협약 당사국의 관행을 분석하여 유엔난민기구가 주최한 일련의 전문가 협의의 결과로 제작되었다.

D. 무국적과 사실상(*de facto*) 무국적

7. 1954년 무국적협약은 제1조 제1항에서 “무국적자”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1항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법률상(*de jure*)” 무국적자라고 칭하거나, 협약 자체에서는 이를 쓰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의 최종문서에서는 “사실상(*de facto*)” 무국적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1954년 무국적협약의 최종문서는 이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³ 제1조 제1항에서 정의된 “무국적자”라는 용어와는 다르게, 사실상 무국적이라는 용어는 어느 국제문서에서도 정의되지 않았으며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조약 체제도 없다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 최종문서에서의 언급은 그 성질상 제한적이며 구속력이 없다).⁴ 1954

³ 특히 1954년 무국적협약의 최종문서 제3항은 사실상(*de facto*) 무국적 지위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권고는 국가가 국적국의 보호를 중단할 유효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개인에게 해당 협약의 혜택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 최종문서의 경우, 사실상 무국적은 정의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람이 “유효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 조항의 혜택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⁴ 사실상(*de facto*) 무국적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유엔난민기구, *Expert Meeting - The Concept of Stateless Persons under International Law ("Prato Conclusions")* (전문가회의 - 국제법상 무국적자의 개념 ("프라토 결정문"))), 2010년 5월, II.A절, <http://www.refworld.org/docid/4ca1ae002.html>. (1) 사실상 무국적은 유효한 국적 개념에 전통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부 회담 참가자는 어떤 사람의 국적은 그 국적국 외에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무효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즉, 본인의 국적국 내에 있더라도 사실상 무국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들은 회담 준비 토론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제법상 국적의 기본적 기능 중 하나인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제공에 근거해 사실상 무국적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더 폭넓게 지지하였다. (2) 해당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실상 무국적자는 국적국 밖에 있으며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이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호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위법행위를 구제하기 위해

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1항상 “무국적자” 정의에 해당하는 자를 무국적자로서 인정하며 이러한 사람을 사실상 무국적자로 잘못 부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1954년 무국적협약이 보장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편람에서는 협약 제1조 제1항에서 정의한 무국적자의 확인과 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법률상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조약 어디에서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법률상 무국적자라고 부르는 것은 피한다.

E. 무국적 심사

8. 1954년 무국적협약은 “무국적자”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와 해당 개인이 받아야 할 처우의 기준을 확립하고 있지만, 그러한 무국적자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54년 무국적협약은 국가가 협약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처우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할권 내의 무국적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⁵ 이 편람은 무국적 심사절차를 설계하는 방식과 이러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 문제 등에 관한 권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의 무국적자 인정을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는 절차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나아가 이 편람은 1954년 무국적협약에서 정의하는 무국적자의 인정 및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위 협약에 구속받지 않는 국가와 사실상(*de facto*) 무국적자 인정에 대해서도 일부 다루고 있다.
9. 상대적으로 소수의 국가에서만 무국적 심사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며 이 절차가 모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절차의 도입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무국적 지위는 국제법상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무국적의 인정은, 특히 1954년 무국적협약상 무국적자에게 부여된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권리의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국적자의 인권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또한 무국적 심사절차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심사절차의 수립은 국가의 1954년 무국적협약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복합 이주의 상황에서 무국적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자국 영역 내 무국적 인구의 규모와 특징을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는데에 무국적 심사절차가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 무국적의 확인은 무국적의 근본 원인과 새로운 경향을 드러냄으로써 무국적의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적국이 행사하는 외교적 보호권뿐만 아니라 국적국으로의 귀환 등을 포함하는 외교적 및 영사의 전반적인 보호 및 지원 또한 뜻한다.

⁵ 1951년 난민협약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국가들은 이를 난민 지위 심사절차 수립과 관련해 인정해왔다. 1977년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8호(XXVIII), a항: 1978년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11호(XXIX), h항: 1979년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14호(XXX), f항: 1980년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16호(XXXI) h항 참조. 유엔난민기구, *Conclusions Adop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1975-2009 (Conclusion No.1 - 109)*(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집행위원회 채택 결정문, 1975-2009 (결정문 제1-109호)), 2009년, <https://www.unhcr.org/en-my/578371524.pdf> 참조.

[역주] 결정문 링크 변경.

F. 무국적 지위

11. 일반적으로 무국적자는 다양한 인권의 향유와 온전한 사회 참여로부터 배제당한다. 1954년 무국적협약은 무국적자에게 일련의 핵심적 권리들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주변화에 대응한다. 1954년 무국적협약의 조항은 적용 가능한 국제인권법상의 기준과 더불어 당사국 내의 무국적자에게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당사국 내의 무국적자에게 부여된 지위, 즉 국내법상 무국적자의 권리와 의무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12. 이 편람은 국가를 지원하여 무국적자가 국가 관할권 내에서 이러한 지위를 부여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편람은 국가가 무국적자로 인정한 사람들의 1954년 무국적협약에 따라 받는 처우와 무국적 심사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지위 문제를 모두 다룬다. 또한 1954년 무국적협약의 비당사국 내에 있는 무국적자뿐만 아니라 사실상(*de facto*) 무국적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지위도 검토한다. 모든 무국적자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처우를 받아야 하나, 무국적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그 처우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편람은 관련된 국제법 기준을 우선 검토한 다음, 무국적자 지위의 적용 범위를 아주 상황에 있는 사람과 "자국" 내에 있는 사람으로⁶ 나누어 각각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난민과 무국적자 사이의 관계도 살펴보도록 한다. 한 개인이 1954년 무국적협약에 의한 무국적이면서 동시에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이 될 수도 있지만, 무국적 난민은 적어도 1951년 난민협약과 국제난민법의 보호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⁶ 아래 142항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자국" 내에 체류할 권리의 본질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제1부 - 무국적 심사 기준

A. 정의

13. 1954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1항은 무국적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협약의 적용상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협약은 제1조 제1항의 유보를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위 정의는 당사국 전체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이에 더해, 국제법위원회는 제1조 제1항의 정의가 국제관습법의 일부라는 결론을 내렸다.⁷ 이 편람은 “무국적자” 정의에 속하지만 협약의 보호에서는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한 1954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2항은 다루지 않는다.

1
부

B. 일반적 고려사항

14. 1954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1항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맥락을 고려하고 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유념하여 해석되어야 한다.⁸ 전문과 교섭기록(*Travaux Préparatoires*)에서 밝히고 있듯이, 1954년 무국적협약의 목표와 목적은 무국적자가 인권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⁹ 초안 입안자들은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국적을 갖는 것이 무국적자로 인정되고 보호받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1954년 무국적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국적이 있는 자는 그 국적을 인정받고 무국적으로 잘못 파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제1조 제1항은 이주 및 비이주 상황 모두에 적용된다. 무국적자는 평생을 한 국가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국경을 넘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무국적자는 동시에 난민이거나 보충적 보호를

⁷ 국제법위원회,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초안 및 해설), 2006년, 49쪽을 참조. 제1조의 정의는 “의심의 여지 없이 관습법적 성격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 해설은 <http://www.refworld.org/docid/525e7929d.html> 참조.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은 1954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1항의 원문을 인용해 무국적자의 정의를 제시한다.

⁸ 위의 기본적 해석원칙을 규정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1조 제1항을 참조. 나아가 제31조는 조약 조항 해석과 관련한 다른 요소도 규정하며, 제32조는 해석의 보완적 방법을 명시한다.

⁹ 해당 전문의 제2항 및 제4항 참조:
국제연합이 수차례에 걸쳐서 무국적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무국적자가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고, …
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개선할 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
("기본 권리와 자유"에 대한 언급은 전문 제1항에서 언급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인용한 것이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¹⁰ 1951년 난민협약의 대상인 무국적자는 난민협약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후술할 제3부에서 더 논할 것이다.

16. 1954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순간부터 당사자는 무국적자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제1조 제1항을 충족한다는 국가 또는 유엔난민기구의 결정은 그 성질상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다.¹¹
17. 제1조 제1항의 정의는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과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라는 2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제1조 제1항에 따라 무국적자인지 여부를 심사할 때, 대개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라는 부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이는 조사의 범위를 당사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국가들로 좁힐 뿐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的 개념을 충족하지 않는 실체를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실제로 당사자와 유일하게 유대관계가 있는 실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와 같이 일부 사례에서는 이 요소만을 고려하더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C. 용어의 해석

(1)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a) 어느 국가를 조사해야 하는가?

18. 제1조 제1항의 정의는 부정문으로 작성되었지만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무국적자인지 여부의 조사는 당사자가 유의미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특히 그 영역 내에서의 출생, 혈통, 혼인, 입양, 상주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한정된다. 그 결과 어떤 경우에는 단 1개의 국가로 (혹은 심지어는 국가가 아닌 실체) 조사 범위가 한정된다.¹²

(b) “국가”란 무엇인가?

19. 제1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한 정의는 국제법상 해당 용어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¹⁰ 이러한 사람은 예를 들어 다음 지침이 규정하는 유럽연합의 부수적 보호 체계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 Council Directive 2004/83/EC of 29 April 2004 on minimum standards for the qualification and status of third country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as refugees or as persons who otherwise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the content of the protection granted (난민이나 그 외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제3국 국민 또는 무국적자의 자격과 지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지침 2004/83/EC). 더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참조.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통한 국제적 보호의 제공에 관한 2005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103호(LVI) <http://www.unhcr.org/43576e292.html>.

¹¹ 이에 따른 영향, 특히 심사절차의 중지 효과(suspensive effect)와 무국적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의 처우 측면에 관하여는 아래 제2부와 제3부에서 다룰 것이다.

¹² 무엇이 유의미한 유대관계를 구성하는가의 쟁점은 무국적 확인에 필요한 증명기준의 맥락에 따라 이 편람 제2부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영향을 받는다. 이 점에서는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의 기준이 유효하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한 국가는 한 실체가 영속적인 주민, 확정된 영역, 정부, 그리고 타국과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때 성립한다. 이후 국제법 담론에서 등장한 국가의 다른 요소로는 해당 실체의 실효성, 민족자결권, 무력사용 금지, 과거 해당 영역에 지배력을 행사했던 국가의 동의 등이 포함된다.¹³

20. 제1조 제1항 적용상 한 실체가 “국가”가 되기 위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편적으로 혹은 광범위하게 국가임을 승인받거나 유엔의 회원국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승인 또는 가입은 국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¹⁴ 특정 실체가 국가의 지위를 획득했는지에 관해서는 국제사회 내에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몇몇 관련 기준과 그 적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어느 실체가 위 문단에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객관적으로 보일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로 해당 실체를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적극적으로 승인하지 않기로 택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결정권자가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특정 실체의 범인격에 대한 자국의 공식 입장을 따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해당 실체의 국제법상 지위보다 심사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더 영향을 받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1. 일단 국가가 성립했다면, 국제법상으로는 정부의 실효성과 관계없이 국가의 계속성에 대한 강한 추정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 분쟁 때문에 국가가 실효적인 중앙정부를 잃었더라도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국가”로 간주할 수 있다.

(2)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a) “법률”的 의미

22. 제1조 제1항에서 “법률”이라 함은 단순히 국회가 제정한 법뿐 아니라 행정부의 부령, 규칙, 명령, (선례 구속의 전통이 있는 보통법 국가의 경우) 판례법,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습적 관행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¹⁵

(b) 국가의 법과 관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때는 언제인가?

23. 어떤 사람이 국가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가가 국적법을

¹³ 한 실체가 신생 국가임을 주장하나 그 발생 과정에서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이 있는 경우, 국가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강행규법은 국제관습법 원칙으로, 그 성질이 절대적이며, 즉, 다른 모든 의무보다 (본질상 관습법이든 조약이든) 우선시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다른 절대적인 규범에 의해서만 뒤집힐 수 있다. 강행규법의 예로 무력사용 금지와 민족자결권 등이 있다.

¹⁴ 그러나 다른 국가의 승인의 성격이 창설적인지 혹은 선언적인지에 관하여는 오랜 논쟁이 있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는 타 국가의 승인이 국가 자격의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후자는 타 국가의 승인이란 국제법상 국가 지위의 증거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각기 다른 접근법 또한 어떤 경우에는 실체의 국가 지위 판단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¹⁵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제2조 제d항에서 유사한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인의 사례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당사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불복절차에서의 판단을 신중히 분석해야 한다.¹⁶ 이는 사실관계의 문제임과 동시에 법적 문제이다.

24. 이렇게 개인이 실제로 갖는 지위를 조사하는 접근법을 적용하면, 개인의 사례에 대한 국가의 국적법 적용을 순수하게 형식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결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국가는 실제로는 법률의 문언을 따르지 않거나 더 나아가 그 실질을 무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1조 제1항 무국적의 정의에서 “법률”이라 함은 성문법을 실제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상황도 포함한다.

(i) 자동적 및 비자동적 방식의 국적 취득 또는 상실

25. 대다수의 국가는 국적의 취득, 포기, 상실 혹은 박탈¹⁷ 등을 통한 국적 변경의 효력 발생에 자동적 및 비자동적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한 국가의 국민인지 아니면 무국적으로 간주되는지 판단할 때, 당사자의 국적이 자동적 또는 비자동적 체계나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6. 자동적 방식은 국적의 변경이 법률의 효력에 의해(*ex lege*) 발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¹⁸ 자동적 방식을 따르면, 국가 영역 내 출생이나 국민인 부모로부터의 출생 등 법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순간 국적을 취득한다. 반대로, 비자동적 방식에서는 국적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개인이나 국가 기관의 행위가 필요하다.

(ii) 관할 정부기관의 확인

27. 국가가 한 개인을 국민으로 간주하는지 확인하려면, 당사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해당 국가에서 어느 기관이 국적 문제를 관할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관할이라 함은, 개인에 대한 국적의 부여 또는 박탈을 담당하거나, 개인이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 국적 판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한다. 관할 정부기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많은 경우 1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된다.¹⁹
28. 일부 국가는 국적 문제를 관할하는 단일한 중앙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관이 국적의 검토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이 된다. 한편 일부 국가에는 국적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다수 존재하며,

¹⁶ 이 접근법은 1930년 국적법 충돌의 특정 문제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제1조와 제2조가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 원칙을 반영한다.

¹⁷ 여기서 상실(loss)과 박탈(deprivation)이라는 용어는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다 는 점을 참조. “상실”은 법률의 효력에 의한(*ex lege*) 국적의 상실이며, “박탈”은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국적의 상실을 뜻한다.

¹⁸ 제1조 제1항의 “그의 법률의 시행상(under the operation of its law)”이라는 표현이 “법률의 효력에 의해(by operation of law)”과 동의어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후자는 자동적 성격의 방식을 의미하는 전문용어이다 (예를 들면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에서 사용된다). 무국적자의 정의는 비자동적 방식뿐만 아니라 자동적 방식을 통해서 취득 또는 상실한 국적을 아우른다.

¹⁹ 위의 사실에 따라 국적을 표명할 관할권이 없는 국가기관의 견해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그 중 1개를 관할 정부기관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관할 정부기관이 반드시 중앙 국가기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관할 정부기관은 지방이나 지역 행정기관 나아가 영사관원일 수도 있고,²⁰ 많은 경우 지방정부의 하급 공무원이 관할 정부기관으로 성립하기도 한다. 그러한 하급 공무원의 결정을 이후에 상급 공무원이 번복할 단순한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제1조 제1항 적용을 판단할 때 전자를 관할 정부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9. 관할 정부기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적 관련 법 중 어느 조항이 해당 개인의 사안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부기관이 그 법조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연관 있는 법조항을 분별해내려면 당사자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실무상 국적법의 해석, 적용 또는 일부 사안에서의 적용 배제 등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0. 특정 사안에서 관할 정부기관이 어디이고 몇 개인가는 특히 다음 요인에 따라 정해진다.
 - 자동적 혹은 비자동적 방식의 국적 취득, 포기, 혹은 상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 조사해야 할 국적 관련 사건이 다수인가

(iii) 비자동적 국적 취득 및 상실에서 관할 정부기관의 증거 평가

31. 국적 변경이 비자동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관할 정부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행위나 결정에 의존하는 체계에서는 해당 기관이 관할 정부기관이 된다.
32. 예를 들어, 귀화 신청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는 위와 같은 체계에서 관할 정부기관이 된다. 보통 이 정부기관의 입장이 결정적이다. 국가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비자동적 방식 중 일부는 관련 공무원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담당 공무원은 국적 부여나 상실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이행해야 한다.²¹
33. 국적 취득에 국가의 행위를 요구하는 비자동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행위를 기록한 시민권 증명서와 같은 문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서는 국적을 입증함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이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필요한 행위가 취해지지 않았고 국적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²² 시민권이 없다는 추정은 이후 국적이 실제로 부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관할 정부기관의 후속 진술, 행위 혹은 증거가 있으면 뒤집힐 수 있다.

(iv) 자동적 시민권 취득 혹은 국적 상실에서 관할 정부기관의 증거 평가

34. 국적 취득이나 상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적 변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국가기관이

²⁰ 아래 39-40항 참조.

²¹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국민이라고 (혹은 국적을 박탈당했다고) 결론내릴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래 50항 참조

²² 귀화 신청이나 비자동적 국적 절차를 통해 제출된 여타 문서는 당사자의 국적에 관한 국가 판정의 증거로 충분치 않다.

없고 개인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명시된 기준이 충족되면 해당 변동이 법률의 효력에 의해(*ex lege*) 발생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영역 내 출생이나 혈통에 따라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또한 국가 승계 시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도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한다.²³ 어떤 법은 해외 거주 기간이 정해진 기한을 넘거나 혹은 일정 기간 내 등록이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35.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적 취득 체계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생등록은 출생지와 부모를 입증하고 이에 따라 출생지주의(*jus soli*)나 혈통주의(*jus sanguinis*)에 의한 국적 취득의 증거를 제공하지만, 그 자체로 국적 취득의 공식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²⁴
36. 자동적 방식의 국적 취득이나 상실을 고려할 때는 국적 부여나 상실의 결정을 내리는 기관보다는 해당 지위를 명확히 밝혀주는 차원에서 개인의 국적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이 관할 정부기관이 된다. 여권발급 부서 또는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시민등록, 특히 출생 등록을 통해 국적이 표시되는 경우)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기관이 각기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개인의 국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정부기관이 여럿이 되기도 한다.

(v) 국가 관행이 자동적 국적 취득과 반대되는 경우의 고려사항

37. 법의 시행상 자동적 국적 취득 기준을 충족해도 관할 정부기관이 그 당사자를 비국민으로 취급하는 경우, 국가가 당사자를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법문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입장이다. 정부 부처 내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거나, 출생 시 자동적 국적 취득을 규정한 법이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대신 개인이 국가와의 추가적인 유대관계를 입증해야만 하는 경우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²⁵

(vi) 관할 정부기관의 입장에 대한 증거 부재 시 국적 판정

38. 당사자가 국가 관할 정부기관과 단 한 번도 접촉해본 적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출생 시 국적 취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사자가 공공 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살며 신분증 명서나 여권을 신청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경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국적에

²³ 그러나 일부 국가 승계 사례에서는 승계국의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대신 비자동적 시민권 취득 체계를 채택하기도 한다. 국제법위원회, *Articles on the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es with commentaries*(국가승계에 관련한 자연인의 국적에 관한 규정초안 및 해설), 1999년 4월 3일, <http://www.refworld.org/docid/4512b6dd4.html> 참조.

²⁴ 출생지주의(*jus soli*)와 혈통주의(*jus sanguinis*)는 각국의 법체계에서 각각 출생지와 국민의 혈통을 근거로 국적 취득을 규정하는 2개의 주요 원칙을 뜻한다.

²⁵ 한 국가의 법이 자동적인 국적 취득을 명시하나 실제 관행에서 개인의 국적 취득에 추가적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그 국적법의 자동적 성격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는 해당 국가가 실제로는 법 외의 추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보여주며, 이러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제1조 제1항의 정의상 무국적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해 해당 국가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국가가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간주되는 모든 사람의 국적을, 예를 들어 신분증 신청 절차 등에서, 비차별적 방식으로 인정해 온 선례가 있다면, 이는 해당 국가가 당사자를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속한 집단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만 발급되는 신분증명서를 거부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흔하다면, 이는 해당 국가가 당사자를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vii) 영사기관의 역할

39. 영사기관의 역할에 관하여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비자동적 국적 체계에서는 영사관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관할 정부기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국내법상 국민의 해외 출생 자녀가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요건으로서 영사관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출생국에 있는 영사관이 관할 정부기관이 되며, 추가로 고려할 후속 절차가 없다면, 영사관의 입장이 아동의 국적을 좌우한다. 개인이 영사관에서의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그 신청을 차단당한다면, 당사는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0. 다른 상황에서도 영사관이 관할 정부기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여권 갱신이나 국적 확인을 위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영사관은 영사 보호의 권한 내에서 법에 따라 당사자의 국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이때 영사관은 관할 정부기관으로 행동한다. 이는 특정 개인의 국적에 관한 타국의 문의에 응답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영사관이 개인의 국적에 관해 입장을 표명할 유일한 관할 정부기관이라면, 영사관의 입장이 일반적으로 결과를 좌우한다. 특정 개인의 국적에 관해 다른 관할 정부기관 또한 입장을 표명한 경우에는 이를 영사기관이 표명한 입장과 비교해야 한다.²⁶

(viii) 관할 정부기관에의 문의

41.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나 국가가 관할 정부기관에 당사자의 국적 확인을 문의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국적의 취득 또는 상실이 자동적인 방식에 의한 경우나, 당사자가 비자동적 체계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거나 박탈당했으나 이에 대한 문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의가 필요하다. 관할 정부기관은 문의에 대해 침묵이나 답변 거부로 대응할 수 있다. 기관의 무응답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내려야 한다. 관할 정부기관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청에 절대 답변하지 않는 정책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무응답만을 근거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국가가 이러한 문의에 통상적으로 응답한다면, 무응답은 보통 당사자가 국민이 아니라는 강력한 확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할 정부기관이 문의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고 당사자 지위의 특정한 상황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답변은 그 중요도가 낮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국적의 문의에 대한 해당 관할 정부기관의 입장은 당사자의 사례에 관여하는 다른 관할 정부기관이 취하는 입장과 비교

²⁶ 국적을 나타내는 신분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여러 기구가 각각 지니는 상대적인 중요도에 관하여는 아래 44항 참조.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²⁷

(ix) 관할 정부기관의 비일관적 처우

42. 다양한 국가행위자가 개인에 대해 비일관적으로 처우하는 경우라면 관할 정부기관의 입장을 평가하는 것이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법과 관행상 국민에게만 제공되는 공적 부조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성인이 되자 여권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 비일관적인 처우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한 것일 수도, 또는 당사자가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결과일 수 있다.
43. 당사자가 정부기관의 행위에 따른 비자동적 체계를 통해 국적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으나, 후에 다른 국가기관이 당사자에게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예: 헌금 제출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사자 권리의 침해이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후속 조치의 성격에 따라 해당 국가가 당사자의 국적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거나 당사자가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44. 국적 취득이나 상실이 자동적으로 혹은 개인의 공식적 행위를 통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해당 취득이나 상실을 후에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분증명서 발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동적으로 혹은 개인의 공식적 행위를 통해 국적을 취득 혹은 상실하는 체계에서는 국적의 증거로 성립하는 여권, 국적증명서, 그리고 국민에게만 발행되는 신분증처럼 신분증명서 발급을 책임지는 관할 정부기관의 견해에 더 큰 중요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²⁸

(x) 착오 또는 악의로 취득한 국적

45. 비자동적 체계에서 관할 정부기관의 행위가 착오로 (예를 들어 법의 적용에 대한 착오 등) 또는 악의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당사자의 국적 취득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이는 1954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1항에 쓰인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근거한다. 개인의 거짓된 신청이나 중요한 사실에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있는 신청의 결과로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정의를 적용할 때는, 비자동적 체계에서 국적의 부여는 그러한 국적 부여에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²⁹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문제의 국적 절차에 착오나 악의를 발견한다면 해당 국적을 박탈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당사자의 현 지위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판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46. 국적 취득 시 기망이나 착오의 영향은 국적의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문서의 부정 취득과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당사자에게 실제로 적용된 자동적 혹은 비자동적 국적 체계와는 무관한 경우가

²⁷ 국가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비자동적 국적 변동 시, 해당 국가 행위의 일환으로 보통 발급되는 문서의 존재는 (또는 그 부재가) 국적 확인에 결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위 33항 참조.

²⁸ 실제로 다른 정부기관이 당사자의 국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때 이러한 관할 정부기관과 협의할 수도 있다.

²⁹ 이러한 상황은 비국민이 단순히 국적의 특권을 누리는 경우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많기 때문에, 국적의 판정을 반드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xi) 불복절차의 영향

47. 한 개인의 국적이 사법부나 다른 기구의 심사나 불복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 그 결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치를 존중하는 국가에서³⁰ 국내법상 불복절차 기구의 결정이 행정부에 구속력을 갖는다면³¹ 보통 이 결정이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당사자의 국적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대표한다. 따라서 그 후 정부기관이 불복절차 기구의 국적 판정과는 다르게 당사자를 처우한다면, 이는 당사자가 국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48. 행정부가 사법부나 기타 심사기구의 견해를 (법적 구속력이 있더라도) 제재 없이 무시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국가기관에 만연한 경우가 그 예시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단은 국민이 아니라는 국가 정부기관의 입장이 해당 집단의 국적권을 지지하는 사법부의 입장보다 더욱 결정적이다.
49.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국적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당 판결이 국내법상으로 당사자의 국적을 변경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앞 문단에서 언급한 법치와 관련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국적을 확정할 것이다. 자동적 국적 취득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당사자나 정부가 별도로 행위를 취하지 않아도 특정 집단을 해당 조항에 포섭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³²

(xii) 시/점의 문제

50. 개인의 국적은 1954년 무국적협약상 적격성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과거나 미래의 국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제1조 제1항의 판정을 내리는 시점에 당사자가 문제의 국가 국민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국적 취득 과정 중에 있으며, 해당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1954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국민으로 간주할 수 없다.³³ 마찬가지로 국적 상실, 박탈, 포기를 위한 요건이나 절차가 부분적으로만 충족되거나 완료된 경우, 당사자

³⁰ 2004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법치(rule of law)”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국가 자체를 포함해, 공공 및 민간의 모든 개인, 기관, 실체가 대중에게 공포되어, 평등하게 집행되며, 독립적 판결을 받고, 국제인권 규범과 기준에 일치하는 법에 책임을 지는 통치 원칙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분쟁과 분쟁 이후 사회에서의 법치와 전환기 정의: 사무총장 보고서), 2004년 8월 23일, S/2004/616, <http://www.refworld.org/docid/45069c434.html>. 6항 참조.

³¹ 그 예외로는 국내법하에서 사법적 판단이 권고에 불과하여 본질적으로 정부기관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³² 예를 들면, 특정 일자 이전에 국가 영역 내에 출생한 사람의 자동적 국적 취득을 규율하는 국적법 조항이 정부의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족 집단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³³ 당시자가 국적 거부 또는 상실과 관련해 구제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거나 전부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접근법이 적용된다.

는 무국적자 정의의 적용상 여전히 국민이다.

(xiii) 자발적 국적 포기

51. 자발적 국적 포기는 개인이 자유의지로 국적을 포기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구술 또는 서면 의사표시의 형태를 취한다. 이에 따른 국적 상실은 자동적으로 혹은 정부기관의 재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³⁴ 일부 국가에서는 자발적 국적 포기를 제1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당사자를 배제하는 근거로 취급한다. 그러나 1954년 무국적협약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무국적자의 인권 향유를 도모하는 협약의 목표와 목적은 비자발적 국적 상실뿐 아니라 자발적 상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국적 포기는 다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충족 등 정당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당사자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무국적을 예상했을지 모른다. 개인의 자유 선택이라는 것은 제1조 제1호에 따른 무국적 인정 시 적격성 판단과는 무관하나 이후 받게 되는 처우와는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다른 무국적자와는 달리 해당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타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국적 인정 시 부여되는 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사안은 제3부에서 다룰 것이다.

(xiv) 국적의 개념

52. 국가의 국적법을 평가할 때는 “국민”을 가리키는 용어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이라는 지위를 프랑스어에서는 “citizen”, “subject”, “national”로 지칭하고, 스페인어에는 “nacional”을 사용한다. 더구나 한 국가 내에서도 국적이 여러 종류여서 명칭과 그에 연계된 권리가 다를 수 있다. 1954년 무국적협약은 인권 보호 체계의 근본적 요소인 국민-국가 사이 관계의 존재를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의 존엄과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므로 제1조 제1항의 무국적자 정의는 당사자와 특정 국가 사이의 정치적 및 법적 성격의 공식적 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국민의 개념을 내포한다. 이는 종교적, 언어적, 민족적 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관한 국적의 개념과는 다르다.³⁵ 그러므로, 협약상 국민의 개념은 국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국제법의 전통적 이해와 일치한다. 이는 즉, 국가가 국적을 기반으로 관할권을 가진다고 간주하는 사람이며, 그 관할권은 개인이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그 타국에 대한 청구권 등을 포함한다.
53. 국가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거주 형태보다는 국적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관할권이 있다고 간주해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1954년 무국적협약 적용상 “국민”이 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위는 최소한 해당 국가 영역에 입국, 재입국 및 거주할 권리와 연계되나, 역사적인 이유로 국가에 속한 본토 외 영역에만 입국이 허용되기도 한다. 국가 내에 국적이 그 종류에 따라

³⁴ 자발적 포기와 당사자가 형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예를 들어 당사자가 관련 요건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여전히 무시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 국적 상실은 구분해야 한다.

³⁵ 국적의 이러한 의미는 예를 들어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난민 정의의 다음 문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종, 종교, 국적/민족 … 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 (강조 추가).

연계된 권리가 각기 다르다고 해서 해당 국적의 보유자가 제1조 제1항의 정의에 따른 “국민”으로 치우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적과 연계된 권리가 타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보다 훨씬 더 적거나 사실상 국제인권상의 의무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다.³⁶ 제한된 권리는 국적의 실효성과 국제인권상의 의무 위반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1954년 무국적협약 무국적자 정의의 적용과는 무관하다.³⁷

54. 제1조 제1항의 “국민”的 개념은 “진정한” 또는 “효과적인” 유대관계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³⁸ 국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영역 내 출생이나 국민의 혈통에 근거한 국가와 개인 사이의 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로 국가 대부분의 국적 취득 기준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해당 국적을 주장하는 국가에서 출생했거나 상주하지 않더라도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여전히 “국민”일 수 있다.
55. 국제법상 국가는 국적의 부여와 상실에 전반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재량권은 조약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특히 국제 및 지역 인권조약에는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다양하며, 이는 국적의 부여, 상실, 박탈에 관하여 적용된다.³⁹ 국제관습법상 금지는 다소 분명하지 않지만, 인종을 이유로 한 국적 박탈의 금지는 한 예시가 될 수 있다.
56. 국제법상 의무에 반하는 국적 부여, 거부 혹은 박탈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의 이러한 위법성은 제1조 제1항의 적용과는 보통 무관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은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1954년 무국적협약의 목표와 목적과 상충된다.⁴⁰

³⁶ 중요한 것은 해당 권리가 특정 개인의 경험상 실제로 준수되는지가 아니라 국적과 일반적으로 연계된 권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³⁷ 국적이 국가 간 특정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과는 반대로, 역사적으로 국적이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도 특정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제법상 요건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³⁸ 이 개념은 외교적 보호의 영역, 즉, 국가가 타국에 의해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대신해 타국을 상대로 외교적 및 여타 조치를 취할 국가의 권리를 관할하는 국제관습법의 영역에서 발생했다. 최근 국제법위원회는 일련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강조했다. 국제법위원회,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초안 및 해설, 33쪽, 위 각주 7 참조.

³⁹ 그 예시로는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9조가 있으며, 이 조항은 모든 여성이 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함과 본인의 국적 취득, 변경 혹은 유지와 (주로 외국인과 혼인 시) 관련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보장한다.

⁴⁰ 이러한 일반적 접근법의 예외로는 그 국제법 위반이 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국가들은 이 위반에 따라 발생한 상황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의무는 해당 국적에 대한 불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 국적을 제1조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포함할 수 있다. 국제관습법상 해당 의무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2부 - 무국적 심사절차

A. 총론

(1) 개요

57. 정부 공무원은 다양한 맥락에서 당사자가 무국적자인지의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는 국적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여권이나 신분증명서를 신청할 때, 합법적 거주나 공공부문 취업을 원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때나 군복무 시에, 정부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국적을 고려해야 한다. 퇴거 절차로 국내에 머물 권리가 위협받을 때도 국적과 무국적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적은 난민지위 심사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에 관한 주장을 평가할 때 관련된 국가를 파악할 때 핵심적인 요소이다. 무국적 인정은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이 규정하는 보호장치의 적용을 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위의 예시들은 다양한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에서 무국적 심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편람은 개인의 무국적 인정을 전적으로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다룬다.

(2) 무국적 심사와 국적에 대한 권리

58. 일반적으로 무국적 심사절차는 1954년 무국적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국가를 지원한다. 그러나 특정 무국적자 주민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무국적은 아주 상황과 비이주 상황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국가에서 나타나는 무국적은 어느 한쪽의 형태를 떤 수도, 혹은 양쪽이 혼재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비이주 상황의 일부 무국적자 주민은 “자국”에 머무르는 사람들로서, 원래 살던 곳에서 무국적이 된 사람(*in situ populations*)으로 부를 수 있다.⁴¹ 이러한 집단은 해당 국가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무국적자 지위 획득을 목적으로 한 심사 절차는 적합하지 않다. 무국적 감소에 관한 기존 국제기준과 국가 관행에 따르면, 이러한 유대관계에는 장기간의 상주 또는 국가 승계 시점에서의 거주가 포함된다. 대상 주민의 상황에 따라서 국가는 무국적 심사절차보다는 맞춤형 국적 캠페인이나 국적 검증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⁴²
59. 맞춤형 국적 캠페인은 당사자에게 무국적 지위를 제공해 무국적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부여하여 무국적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국가에서, 일부의 경우는 유엔난민기구의

⁴¹ “자국(own country)”이라는 표현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2조 제4항과 이에 대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해석을 차용했다.

⁴² 유엔난민기구, *UNHCR Action to Address Statelessness: A Strategy Note*(무국적 해결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행동: 전략 계획), 2010년 3월, 50쪽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b9e0c3d2.html> 참조.

… 현실적, 즉각적 목표가 해당 인구의 국적 취득, 재취득, 또는 확인인 경우에 공식적 무국적 심사에 지원을 모두 할당해서는 안 된다. 한 주민 집단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만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기화된 상황이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제2부 무국적 심사절차

도움을 받아,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장기 무국적 주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국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원래 살던 곳에서 무국적이 된 사람에 속하지 않는 무국적자를 위한 무국적 심사절차 수립이 여전히 도움이 되며, 이는 한 국가 내 성격이 다른 무국적자 집단이 혼재하거나 그 양상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 국적 검증 절차는 영역 내에서 국적을 증명할 때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지원한다. 이러한 절차는 접근 가능하며, 신속하고 간단한 과정을 통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적의 (타국 국적 포함) 기록화 (documentation)를 주로 포함한다.
61. 국적 캠페인과 국적 검증의 절차적 요건은 실무상 무국적 심사절차의 요건과 유사하며, 이는 이러한 절차가 한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의 형태와 신청자가 국적 입증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 문서 증거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국가 영역 내에서 출생했거나 부모가 국민이라는 국적법상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선서 후 증언으로 충분할 수 있다.

B. 심사절차의 수립

2
부

(1) 심사절차의 설계와 위치

62. 1954년 무국적협약은 무국적 심사절차의 설계와 운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이에 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어떤 접근법을 택할 것인지는 무국적 인구의 추정 규모와 다양성 같은 지역적 요인뿐만 아니라 검토해야 할 법적 문제와 증거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절차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국적 심사가 해당 체계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목표여야 한다.
63. 현재 국가 관행은 어느 행정조직에서 무국적 심사절차를 담당하는지에 따라 다양하며, 이는 각국의 특수한 고려사항을 반영한다. 각국은 중앙집중식 절차와 지역 정부기관의 절차 중 선택할 수 있다. 중앙집중식 절차는 지위 심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전문성을 더 계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국가 내 다양한 지역의 신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단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지역사무소에서 접수받은 서면 신청서를 중앙심사기구로 송부하면, 중앙기구는 신청자 개인 면접을 포함하여 관련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
64. 한 개인이 무국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심사절차를 가능한 간단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국가와 무국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일부 국가는 기존의 행정절차를 변형하여 무국적 심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행정적 역량, 무국적 문제에 관한 기존 전문성, 나아가 무국적 인구의 예상 규모와 특징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절차와 결합된 무국적 심사절차에서는 무국적자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합당하게 적용하며, 절차적 보호장치와 증거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65. 어떤 국가는 무국적 심사절차를 이민국 관할로 통합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다른 국가는 귀화 신청이나 국적 판정 신청 등 국적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에 무국적 심사를 맡기기도 한다. 이 방식은 당사자가 해당 국가에 장기 거주한 경우 특히 적합할 수 있다.
66. 일부 무국적자는 동시에 난민일 수도 있으므로, 같은 절차 안에서 무국적 심사와 난민 심사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무국적 심사절차의 형태나 위치와 관계없이 비호신청자와 난민의 신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항상 준수해야 한다.⁴³
67. 무국적 심사절차를 설계할 때는 재정적 및 인적 자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이다. 무국적 심사절차를 수립한 국가에서는 신청자의 수가 적었던 경우도 있었다. 소요 비용은 해당 심사절차가 없었다면 다른 이민 지위 신청 등 무국적자가 이용했을 다른 행정 체계를 이용하지 않아 절약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다.

(2) 절차에의 접근성

68. 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맞춤형 정보 캠페인과 절차 상담 등을 통한 정보 배포를 통해 무국적자가 해당 체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도모할 수 있다. 때로 사람들이 무국적 심사절차를 모르거나, 무국적 지위 신청을 망설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기관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보호장치가 유용할 수 있다.
69. 해당 국가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국적 심사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무국적 심사 신청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무국적협약상의 근거는 없다. 많은 무국적자들이 국적 부재로 인해 합법적 입국 또는 거주에 필요한 바로 그 문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요건은 특히 불공평하다.
70. 또한 협약에는 무국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근거도 없다. 신청 기한의 설정은 개인이 1954년 무국적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자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3) 절차적 보장

71. 무국적 심사절차는 법으로 공식화되어야 한다. 법을 통한 절차 수립은 공정성, 투명성과 명료성을 보장한다. 절차적 보장은 무국적 심사절차의 기본 요소이다. 난민지위 심사절차 등 행정법 절차에서는 적법절차(due process)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무국적 심사절차에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가 다음의 보호장치를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 자격요건, 심사절차, 무국적 인정에 연계된 권리에 관한 정보는 정부기관이 다양한 언어로 폭넓게 배포한다. 절차에 관한 상담은 신청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모든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⁴³ 난민 심사절차와 무국적 심사절차의 조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 78-82항 참조.

제2부 무국적 심사절차

2
부

- 의사결정 담당자와 면접할 권리가 있다.
 -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며,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서면 신청과 면접 시 통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가족구성원 각각이 독립적으로 신청할 권리가 있다.
 - 성인이 부양아동을 대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동반 아동을 위한 특별한 절차적 보장 또한 제공된다.
 - 아동이 본인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시할 능력이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 신청자는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법률 지원이 가능하다면, 재정적 수단이 없는 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결정은 개별 신청의 내용에 기초하여야 하고, 관련 국가의 국적법과 관행에 관한 국가정황정보를 참고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과거 특정 기간 동안의 법과 관행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 사법절차에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 절차로 한다.
 - 결정은 이유를 부기해 서면으로 내린다.
 - 결정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내리고 전달한다.
 -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다.
 -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다.
72.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심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신청자를 자국 영역에서 퇴거시키지 않아야 한다.
73. 개별적 면접에 대한 권리와 전 과정에서 필요한 통번역 지원은 신청자가 본인의 사례를 온전히 제시하고 신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히 밝히는 것에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보장을 통해 결정권자가 개별 사건에서 모호한 점을 조사할 수 있다.
74. 증거 수집에 필요한 합리적 시간을 고려하되 무국적 심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 어떤 국가는 심사기관이 무국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한을 설정하기도 한다.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하고 무국적 신청이 명백히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몇 달 정도만 필요하기도 한다.
75. 일반적으로, 신청 제출 후 최초 결정을 내리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면 신청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지내야 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타국에 당사자의 국적을 문의하여 기간 내에 실질적 답변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면 절차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속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⁴⁴

76. 일차 결정이 부정적일 때 불복할 효과적인 권리인 무국적 심사절차의 필수적 보호장치이다. 불복절차는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해야 한다. 신청자는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무료 법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재정적 수단이 없는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77. 최초 결정에서 증거를 부정확하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문제와 법적 문제 모두에 대해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 불복기구가 1954년 무국적협약상의 무국적자인지에 관한 이전 결정을 독자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지, 혹은 단순히 최초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사를 위해 심사기관으로 환송할지는 국가의 재량이다. 여기서의 국가의 선택은 법적/행정적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택하는 접근법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국가는 법적 문제만을 다루는 추가적인 사법심사를 허용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사법체계의 절차 규칙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C. 난민 지위와 무국적 심사의 조율

78. 한 신청자가 난민과 무국적 지위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각각 평가하고 두 유형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1951년 난민협약하에서의 보호가 1954년 무국적협약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더 폭넓은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 미취득 상태에서 난민 지위가 중지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국적자로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79. 무국적자가 난민이거나 보충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⁴⁵ 국가는 무국적 심사절차에서 무국적일 가능성이 있는 난민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무국적 심사절차의 모든 신청자에게 난민 관련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기해야 한다고 절차 시작 시점부터 안내해야 한다.⁴⁶ 난민이나 비호신청자의 신원을 당사자의 출신국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아래 96-99항에서 논할 바와 같이, 무국적 심사관이 외국 정부기관에 신청자에 관해 문의해야 할 경우, 이로 인해 난민과 비호신청자가 누려야 할 비밀유지의 권리가 해손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난민 지위 심사를 진행하고 무국적 신청에 대한 심사는 중지한다.
80. 난민 지위와 무국적 심사가 별도 절차로 진행되고 출신국과 접촉하지 않고도 무국적 심사가 가능하다면, 양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절차에서 나온 정보를 다른 절차에 활용할 수

⁴⁴ 이는 신청자가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기준의 처우를 받아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제3부 참조.

⁴⁵ 보충적 형태의 보호에 관련한 2005년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103호(LVI)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3576e292.html> 참조.

⁴⁶ 마찬가지로 난민 지위 신청자는 무국적자 인정 신청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아야 한다.

제2부 무국적 심사절차

있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난민 심사절차의 면접을 진행하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81. 비슷하게, 난민 심사와 무국적 심사를 결합한 절차에서 양쪽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심사관은 난민과 무국적 심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⁴⁷ 외국 정부기관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당사자가 무국적이라고 결론 내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난민 지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82. 별도 절차와 결합 절차 모두, 특정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중지된 무국적 심사를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무국적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재개될 수 있다.
 - 난민 신청의 기각;
 - 난민 지위 인정 후 중지;
 -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의 인정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난민 지위의 취소;⁴⁸
 - 당사자가 무국적이라는 추가적인 증거 등장.

이는 무국적 지위와 보충적 형태의 보호 양쪽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D. 증거의 평가

2
부

(1) 증거의 종류

83. 무국적 심사는 사실관계와 법에 관한 복합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 무국적 심사는 국적법 자체의 분석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이는 무국적자의 정의가 공무원이 사법적 결정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포함해⁴⁹ 국적법의 실제 적용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관련 있을 수 있는 증거는 당사자의 개인적 상황에 관한 증거와 해당 국가에서의 법과 기타 상황 관련 증거, 2개 종류로 나눌 수 있다.
84. 개인적 배경과 관련한 증거는 신청자의 국적을 판정할 때 어느 국가와 국적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⁵⁰ 어떤 사례에서도 다음 예시적인(non-exhaustive) 목록의 증거가 쓰이게 될 것이다.

- 신청자의 증언 (서면 신청서, 면접 등);

⁴⁷ 난민 지위 심사는 개인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국이나, 무국적자의 경우 종전의 상주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편람과 지침, HCR/1P/4/ENG/REV.3, 2011년 12월,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f33c8d92.html>, 87-93항과 101-105항 참조.

⁴⁸ 유엔난민기구, Note on the Cancellation of Refugee Status(난민 지위의 취소에 관한 해설), 2004년 11월 22일,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1a5dfd94.html> 참조.

⁴⁹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위 48번 항 참조.

⁵⁰ 아래 92항 참조.

- 외국 정부기관에 신청자의 국적을 문의해 받은 답변;
 - 신분증명서 (출생증명서, 시민 등록부 발췌본, 국가의 신분증, 유권자 등록 문서 등);
 - 여행증명서 (만료된 문서 포함);
 - 국적의 취득 또는 국적의 증명 획득을 위한 신청에 관한 문서;
 - 귀화증명서;
 - 국적포기증명서;
 - 신청자의 국적 문의에 대한 국가의 과거 답변;
 - 혼인증명서;
 - 병적증명서/전역증명서;
 - 학교 관련 증명서;
 - 의료 증명서/기록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 관련 증명서, 예방접종 수첩 등);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분증명서와 여행증명서;
 - 상주국의 거주 허가증 등 이민 관련 문서;
 - 거주국 관련 기타 문서 (예를 들어 고용 문서, 부동산 증서, 임대차계약서, 학교 기록, 세례증명서 등);
 - 이웃과 공동체 구성원의 선서 후 구술 증언 기록.
85. 검토 대상인 국가의 국가정황정보는 해당 국가의 국적법과 기타 관련법, 그 시행과 실제 관행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사법 결정 존중 정도 등 해당 관할권의 전반적 법문화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출처에서 얻을 수 있다. 특정 국가의 국적법과 실제 관행이 복잡하다면 전문가 증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
86. 정확한 국가정황정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편향적이지 않은 출처를 가능하다면 1개 이상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국가의 국적 체계에 직접 관여하는 국가기관이나 해당 사안의 감시와 논평에 전문성이 있는 비정부행위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바람직하다. 이때 국가정황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관련 국가의 국적법과 관행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활용 할 국가정황정보는 주어진 사건에서 고려하는 국적 사건과 동 시점의 정보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한 국가의 국적법 적용에 관한 공무원의 관행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이 점을 국가정황 정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

(2) 증명의 문제

87. 무국적 심사절차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개인의 주장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구술 및 서면 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88. 1954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1항의 무국적자의 정의는 소극적 사실(a negative)의 증명, 즉 개인이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을 요구한다. 이는 신청자에게는 큰 난관이 되며, 무국적 심사절차에서 증거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3) 증명책임

89. 법적 절차에서 증명책임이란 주장이나 혐의 입증의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의 문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혹은 사법적 절차에서는 신청자가 본인의 주장을 구체화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무국적 심사의 경우,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공유되며, 신청자와 심사관 양측이 협력해 증거를 찾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는 개인이 1954년 무국적협약 범위에 속하는지 밝히기 위한 협업 작업이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관해 진실되게, 가능한 한 완전한 설명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심사기관은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관련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여, 신청자의 지위에 관해 객관적인 심사를 가능케 해야 한다. 이러한 비당사자주의적 접근법은 이미 무국적 심사절차를 운용하는 여러 국가 관행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90. 무국적의 본질을 고려하면, 무국적 지위 신청자들은 문서 증거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증거를 제시해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무국적 심사기관은 이 점을 유념하고, 적절한 경우 특정한 종류의 증거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증언상의 설명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⁵¹

(4) 증명기준

91. 증명책임과 마찬가지로, 무국적 심사에 필요한 증명기준이나 증거의 적정선은 무국적 증명에 내재한 어려움을 특히 신청에 대한 부정확한 기각이 미칠 결과에 비추어 고려해야 한다. 무국적 증거에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면 1954년 무국적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난민 지위 심사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증거기준을 채택할 것을 국가에 권장하며, 이는 다시 말해, 개인이 어떤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인 정도”로 증명된다면 무국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⁵²

⁵¹ 개인이 외국 정부기관이 적절하게 공증했거나 직인을 찍어 발행한 문서를 얻기 어려운 경우 또한 융통성이 필요할 수 있다.

⁵² 난민 지위의 인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편람과 지침, 42항 참조, 위 각주 47. 난민 지위 심사에서 개인은 “출신국 내 계속 머무르는 것이 협약상 난민 정의에 언급된 이유로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정도로” 증명함으로써 박해를 것이

92. 국적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그 영역 내 출생, 혈통, 혼인, 입양, 상주 등을 기반으로 신청자와 유의미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만 고려 대상이 된다.⁵³ 그러나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국민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심사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무국적을 합리적인 정도로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적의 증거로는 예를 들어 신청자가 귀화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되었다는 타국의 귀화 관할 정부기관의 서면 확인서나 타국의 국적법과 실제 관행상 신청자가 자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정보 등을 들 수 있다.⁵⁴
93. 신청자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심사기관이 특정 국적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더라도, 신청자는 합리적인 정도로 본인의 무국적을 증명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여타 얻을 수 있는 증거가 합리적인 정도로 무국적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⁵⁵ 그러나 이런 사례는 신청자가 개인적 배경을 뒷받침할 증거 및/또는 관련 증언을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5) 증거의 중요도

94. 무국적 심사절차에서 개인적 배경에 관한 진정한 문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무국적에 관한 결론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이 증거가 당사자의 증언보다 우선시된다. 그러나 문서적 증거가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면 혹은 구술 증언, 얻을 수 있는 국가정황정보, 관련 국가에의 추가적 문의 결과의 중요도가 더 커진다. 이하에서 서술할 무국적 심사에서 보통 활용되는 몇몇 종류의 증거별 중요도에 관한 지침은 앞서 제1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 다룬 지침과 함께 읽어야 한다.

(6) 여권

95. 유효기간이 남은 진정한 여권이 있다면 여권 소지자가 이를 발급한 국가의 국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실제로는 해당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예를 들면, 편의 여권(passport of convenience)이거나 국적 문제에 관할권이 없는 정부기관의 착오로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증거 등이 있다면 그 추정이 뒤집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여권은 당사자가 국민이라는 국가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는다. 위조나 그 밖에 부정한 방식으로 발급된 여권으로는 아무런 추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⁵⁶

(7)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문의와 답변

96. 때때로 외국 정부기관이 제공한 정보는 무국적 심사절차에 핵심적 중요성을 갖지만, 이는 다른 충분

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주장할 수 있다.

⁵³ 위 18항 참조.

⁵⁴ 해당 국가 영사관을 포함해 타국에서 얻은 증거의 취급에 관해서는 위 27-44항 참조.

⁵⁵ 아래 (9)절 신빙성 문제 참조.

⁵⁶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 45항 및 46항 참조.

제2부 무국적 심사절차

한 증거가 있다면 언제나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당사자가 난민이 아니거나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과 관련 있는 국가의 정부기관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97. 개인의 국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 정부기관과 접촉하는 절차에는 융통성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외국 정부기관은 다른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낸 문의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정부 기관의 경우 개인의 요청에만 답변한다고 알리기도 한다.⁵⁷
98. 무국적 심사기관이 외국 정부기관에 개인의 국적 또는 무국적 지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그 기관은 해당 국가의 응답이나 무응답에 얼마나 중요도를 둘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⁵⁸
99. 외국 정부기관의 답변에서 그 사유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에 현지법을 적용할 때 실수가 있거나 사실관계 평가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답변은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무국적자 정의의 적용상 개인이 타국의 국민인지 심사할 때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의 주관적 입장이다.⁵⁹ 시간이 허락한다면, 무국적 심사기관은 당사자의 국적을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게 그 답변에 대한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 뒤늦게 당사자를 국민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

2
부

(8) 면접

100. 신청자 면접은 무국적 심사 결정권자가 제시된 증거와 관련한 의문을 해소할 중요한 기회이다. 적대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열린 질문을 던지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고,⁶⁰ 이는 신청자가 가능한 한 온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돋는다.⁶¹ 면접 시작 시에는 신청자에게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야 한다. 그렇지만 신청자는 능력이 되는 한 최선으로 대답할 수 있을 뿐이고, 출생지나 출생 등록 여부와 같은 기본 정보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통상적으로 신청자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은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때로는 후속 면접이 필요할 수도 있다.

(9) 신빙성 문제

101.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은 얻을 수 있는 문서 증거를 국가정황정보에 비추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결

⁵⁷ 국가는 국적 관련 문의를 위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 양정 체결을 희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시 중 하나는 1999년 국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ssue of a Certificate of Nationality)으로, 국제시민적지위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Civil Status), 유럽연합 또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가입할 수 있다.

⁵⁸ 이 문제에 관한 지침은 위 41항에서 제공한다.

⁵⁹ 개인의 사건에 대한 현지법 적용의 착오는 해당 국가의 입장을 결정할 때에 무관하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위 45항 및 46항 참조.

⁶⁰ 난민 지위의 인정 절차와 기준에 관한 편람과 지침, 200항 참조, 위 각주 47.

⁶¹ 면접 기법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다음 참조. 유엔난민기구, *Interviewing Applicants for Refugee Status*(난민 지위 신청자의 면접), RLD 4, 1995년, <http://www.unhcr.org/refworld/pdfid/3cceaa3304.pdf>. 또한 유엔난민기구, *Beyond Proof, Credibility Assessment in EU Asylum Systems: Summary*(증명을 넘어: 유럽연합 비호 체계의 신빙성 평가: 요약본), 2013년, <http://www.refworld.org/docid/51a704244.html>, 24쪽 참조.

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얻을 수 있는 문서 증거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경우, 심사기관은 신청자의 증언에 더 의존해야 하므로 신청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결정권자는 객관적인 신빙성 지표, 즉 제시된 세부사항의 구체성과 충분성, 신청자 본인의 서면 및 구술 진술을 포함한 진술의 일관성, 신청자의 진술과 증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진술 사이의 일관성, 출신국 국가정황정보와의 일관성, 진술의 개연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02. 신청자는 교육 수준과 관련 사건 당시 연령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국적법과 그 적용은 복잡한 문제이다. 정부기관이 왜 특정 결정을 내렸는지 혹은 고려 대상인 국가에서 국적 관행이 어떤지 신청자가 언제나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해당 결정에 신청자의 민족적 정체성이 중요한 경우, 그의 문화적 관습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의 확인 역시 특히 교육 수준과 전통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핵심적인 질문을 지속적으로 이유 없이 회피하는 것은 당사자의 증언 중 해당 측면에 관한 신빙성에 합당한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특정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103. 신청자의 설명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무국적 심사 결정권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이야기가 내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또한 관련 국가의 국적법과 실제 관행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일치하며, 얻을 수 있는 문서 증거나 다른 증거로 사실확인이 되는지도 보아야 한다. 신빙성은 신청자의 설명 중 사소한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훼손되지는 않으며, 그 불일치가 해당 신청에 중요하지 않거나 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신청자의 증언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증거와 상충된다면, 문제의 국적 체계의 적용에서 해당 국가 내에 지역적 차이나 정치적 배경, 민족, 종교, 혹은 기타 사유를 근거로 하는 차별적 관행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04. 신청자의 태도는 신빙성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무국적자는 국적 부재로 인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중 불안해하거나, 말을 잘 하지 않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신청자와 결정권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특정한 형태의 태도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일도 잦다.
105. 신청자가 적절한 면접 환경에서 본인의 설명 중 명백한 차이, 모순, 불일치를 설명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부정적 추론을 해서는 안 된다.
106. 신청에 중요한 사실의 신빙성은 신빙성 지표를 참고하여 판단하며, 이때 외견상 신빙성 문제가 있더라도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를 고려하고, 신청자의 개인적 상황을 적절히 감안해야 한다. 신청자의 진술과 다른 얻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두 합당하게 고려했으나, 신청자가 주장한 관련 사실의 신빙성에 여전히 의심이 남고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benefit of the doubt)" 원칙의 적용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⁶²

107. 신청자 진술의 중요한 요소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이 점이 무국적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신청자의 증언은 관련 국가와 관련한 증거 등 무국적 인정을 여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증거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⁶³

E. 절차상의 추가적 고려사항

(1) 집단 심사

108. 무국적의 본질을 고려했을 때, 신청자의 개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개인별 절차가 기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무국적 심사절차를 채택한 국가들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따랐다. 이러한 국가 대부분은 1954년 무국적협약의 당사국으로, 아주 상황에 있는 개인에 대한 국적/무국적을 평가하고 있다.
109. 그러나 한 집단 내의 개인을 무국적자로 일응 추정하여(*prima facie*),⁶⁴ 즉 온전한 개별 지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 무국적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집단구성원들의 국적 부재에 대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1954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1항의 무국적자 정의를 일응(*prima facie*) 충족한다고 보는 경우 이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반대 증거가 없는 한, 협약상 보호를 받을 개인의 자격은 제1조 제1항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확인된 집단의 구성원인지 아닌지가 좌우한다.
110. 무국적의 일응 추정은 부수적 범주나 더 낮은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증거를 평가하여 1954년 무국적협약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들은 무국적자로서, 해당 지위가 종료될 때까지 연계된 권리 to 누린다. 개별 심사 체계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일을 추정상 무국적 불인정 결정을 받은 집단 내 개인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있어야 한다.
111. 집단 심사는 1954년 무국적협약 제1조 제2항에서 명시한 배제조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고려해야 한다. 제1조 제2항에 속하는 사람은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무국적자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1954년 무국적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⁶⁵

⁶² 다른 맥락에서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 원칙에 관한 논의는 다음 참조, 증명을 넘어: 국제연합
비호 체계의 신빙성 평가: 요약본, 44쪽, 위 각주 61.

⁶³ 난민 지위 심사에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적용한다. 난민 지위의 인정 절차와 기준에 관한 편람과 지침, 42항 참조, 위 각주 47. 무국적 정의의 본질을 고려할 때, 신빙성 문제는 난민 지위의 인정보다 무국적 인정을 막을 가능성성이 낮다.

⁶⁴ 일응 추정상(*prima facie*) 인정 기법은 보통 집단을 대상으로 한 난민 지위 심사에서 이용된다. 그러나 개별 심사에도 또한 적용되어 왔다.

⁶⁵ 제1조 제2항은 대안적 보호 경로가 있거나,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 규정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외에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로서 그러한 보호와 원조를 받는 한에 있어서:

(2) 구금

112. 무국적을 이유로 보호를 구하는 사람을 통상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자의적이다.⁶⁶ 무국적은 그 본질상, 국민이 일반적으로 소지하는 기본적인 신분증명서 및 여행증명서에의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더구나, 무국적자는 어느 국가에서도 합법적 거주 지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국적 심사 신청자의 구금은 미등록 여부 혹은 필요한 이민 허가의 부재를 이유로 일반적인 정당화를 할 수는 없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9조는 위법한 구금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구금 또한 금지한다. 구금이 합법적이려면 이를 국내법에서 규율하여야 하며, 구금 기간의 상한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기적으로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구금이 자의적이지 않으려면 구금이 개별 사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무기한 구금뿐만 아니라 필수적 구금은 그 자체로 자의적이다.⁶⁷
113. 따라서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고, 다른 덜 침해적이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고려하였으나 그러한 수단으로는 구금이 추구하는 정부의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신고의무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구금해제, 구조화된 공동체의 감독 및/또는 사례 관리 프로그램 등 구금 대안이 항상 구금의 필요성 및 비례성 평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구금과 관

(ii) 거주를 정한 국가의 관할 정부기관에 의하여 그 국적의 보유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

(iii) 다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자: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b)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⁶⁶ 이민 구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취한 입장 참조: (58) 이주민 구금은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정규 이주 상황의 이주민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비정규 이주의 범죄화는 자국 영역 보호와 비정규 이주의 규제에 관한 국가의 적법한 이익을 넘어선다. (59) 행정적 구금이 필요하다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엄격한 법적 제한을 준수하고 사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 예를 들어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이주민 확인의 필요, 무단이탈 위험, 퇴거명령을 받은 비정규 이주민의 추방 진행 등을 법에 명백히 정의하고 제한적으로 열거해야(exhaustively enumerated) 한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인권이사회 보고서), A/HRC/13/30, 2010년 1월 18일, <http://www.refworld.org/docid/502e0fa62.html>. 무국적자와 관련하여는, 무국적의 확인, 방지와 감소 및 무국적자의 보호에 관한 2006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106호(LV1) <http://www.unhcr.org/453497302.html> 참조. 결정문은 “국가가 무국적자를 무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하지 않고 국제인권법에 따라 처우할 것을 촉구”한다.

⁶⁷ 다음의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 참조. *van Alpen v Netherlands*, Communication No. 305/1988, 1990년 7월 23일, <http://www.refworld.org/docid/525414304.html>. 5.8항: *A v Australia*, CCPR/C/59/D/560/1993, 1997년 4월 30일, <http://www.refworld.org/docid/3ae6b71a0.html>. 9.4항: *Danyal Shafiq v Australia*, CCPR/C/88/D/1324/2004, 2006년 11월 13일, <http://www.refworld.org/docid/47975af921.html>. 7.3항. 난민 맥락에서는, 난민과 비호신청자의 구금에 관한 1986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44호(XXXVII) 참조, <http://www.refworld.org/docid/3ae68c43c0.html>. 결정문은 비호신청자의 구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야 하나 필요 시 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당사자의 신원 판정을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훼손했거나 정부기관을 오도하기 위해 거짓 문서를 제출한 경우, 및/또는 국가보안이나 공공질서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유엔난민기구, *비호신청인의 구금 및 구금 대안에 관한 적용 기준 및 표준 지침*, 2012, <http://www.unhcr.org/505b10ee9.html> 또한 참조.

제2부 무국적 심사절차

련한 일반적 원칙은 아동에게는 한층 더 강력하게(*fortiori*) 적용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을 구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14. 무국적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금하는 경우, 기소된 범죄자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구금해서는 안 된다.⁶⁸ 또한 구금에 대한 사법적인 감독이 항상 필요하며, 구금된 사람은 (재정적) 수단이 없는 사람을 위한 무료 상담을 포함해 법률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15. 신분이나 국적 검증을 위한 지위 심사절차의 부재는 무국적자의 장기 또는 무기한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무국적 심사절차는 장기 구금 혹은 자의적 구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116. 유엔난민기구는 국가가 무국적 관련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⁶⁹ 유엔난민기구는 여러 국가의 무국적 심사절차를 비교한 지식과 자체적인 무국적 및 국적 판정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무국적 심사절차 개발과 기존 절차 개선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⁷⁰ 나아가 무국적 심사 기관이 타국의 정부기관에 문의를 보내는 것을 도울 수 있고 국적법과 관행에 대한 정보 출처 역할을 할 수도 있다.⁷¹ 신청자의 유엔난민기구 접근권 보장 또한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난민기구는 개별적 및/혹은 필요하다면 집단적 차원에서 자체 무국적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부

(4) 해외에서의 해결책 모색

117. 일부 무국적 심사 신청자는 타국에 입국/재입국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는 국적의 취득 혹은 재취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례는 아주 상황에서 무국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가 간 협조의 쟁점이 제기된다. 입국/재입국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정당하지만, 이는 무국적 심사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려면 무국적

⁶⁸ 마찬가지로 비호신청자의 구금에 관한 지침 참조, 위의 글.

⁶⁹ 이는 특히 유엔총회 결의안 제61/137호, 4항에 따른다. 위 4항과 부록 IV 참조.

⁷⁰ 2006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106호(LVII). 위 각주 66에서 제시한 대로, 집행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에게 “무국적자의 확인, 기록 및 지위 부여에 적절한 체계에 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배포하고,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 담당자의 훈련을 제공”하고 “1954년 무국적협약의 당사국이 그 조항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관해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t)항 및 (x)항). 또한 이 편람 부록 V 참조.

[역주] 원문 "note 666 above ..."를 "위 각주 66"으로 수정.

⁷¹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Refworld 데이터베이스, www.refworld.org, 혹은 유럽연합 민주주의 감시기구(EUDO)의 국적법 데이터베이스 <http://eudo-citizenship.eu/databases>, 아프리카 거버넌스, 감시 및 권리옹호 프로젝트(AfriMAP) www.afrimap.org 등 같은 지역 정보 출처에서 제공하는 국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각국에 권장한다.

[역주] 유럽연합 민주주의 감시기구는 European Governance and Politics Programme(EGPP)로, EUDO Citizenship은 Global Citizenship Observatory (GLOBALCIT)로 변경되었다. <https://globalcit.eu/databases/>.

인정이 필수적이므로, 심사절차의 중지는 적절치 않다.

(5) 특정 집단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상 및 증거 관련 보호장치

118. 특정 집단은 본인의 국적 증명에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정한 무국적 심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연령,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일부 당사자에게는 추가적인 절차상 및 증거 관련 보호장치의 제공이 필요할 수 있다.
119. 아동, 특히 미동반 아동(unaccompanied children)은 본인의 국적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국적 심사절차를 수립한 국가는 아동의 국적과 무국적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반드시 아동 최선의 이익 추구 원칙을 따라야 한다.⁷² 아동 신청자를 위한 추가적 절차상 및 증거 관련 보호장치는 신청의 우선적 처리, 적합한 훈련을 받은 법률대리인, 면접관과 통역사 제공뿐만 아니라 국가가 증명책임을 더 부담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120. 특정 상황에서는, 본인의 국적에 대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비슷한 배려를 적용할 수 있다.⁷³ 장애인은 차별 때문에 신분증명서나 다른 문서를 소지할 가능성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무국적 심사 결정권자는 고려해야 한다.
121. 원하는 모든 신청자가 본인과 성별이 같은 면접관과 통역사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면접관과 통역사는 문화적 혹은 종교적 민감성이나 연령, 교육수준 같은 개인적 요인을 인지하며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여성은 차별 때문에 국적 증명에 관련된 출생증명서나 여타 신분증명서 등 관련 문서 취득에 더 큰 장벽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F. 1954년 무국적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무국적 심사

122. 1954년 무국적협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무국적자 중 많은 사람은 협약에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비체약국은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고려하여, 자국 영역 내 무국적자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무국적 심사절차를 도입하였다. 무국적은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보면,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보호(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국적과 관련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9조), 모든 아동의 국적에 대한 권리(자유권규약 제24조 제3항 및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 등과 관련하여 법

⁷² 모든 미동반 및 분리된 아동은 그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무국적 심사절차의 결과는 난민 지위 심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최선의 이익 결정의 일환이다. 난민 지위 심사절차와 최선의 이익 결정과 관련해서는 유엔난민기구, *UNHCR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아동 최선의 이익 결정에 관한 유엔난민기구 지침), 2008년 5월, <http://www.refworld.org/docid/48480c342.html> 참조.

⁷³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문, (e)항.

제2부 무국적 심사절차

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이다.

123. 사실상(*de facto*) 무국적자 또한 1954년 무국적협약의 보호 체계 밖에 있다.⁷⁴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무국적 개념을 (명칭이 모두 사실상 무국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국 무국적 심사절차에 통합하여, 1954년 무국적협약 기준과 병렬적으로 사실적 무국적에 기초하여 보호받을 자격을 검토하고 있다.
124. 국가가 1954년 무국적협약상 무국적자와 더불어 사실상 무국적자에게도 보호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사실상 무국적자는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 이민 상황이나 장기 구금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무국적 인정 절차의 유형을 결정할 때 국가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는 심사 시작 시에는 신청자 본인에게조차도 신청자가 1954년 무국적협약에 따른 무국적인지 아니면 사실상 무국적인지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있다. 무국적 심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해당 절차는 개인이 난민 혹은 1954년 무국적협약상 무국적자로서의 보호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이는 이러한 지위 인정이 사실상 무국적자 인정보다 국제법상 국가에 더 큰 의무를 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부

⁷⁴ 위 7항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상(*de facto*) 무국적자라는 용어에 대한 국제적 정의는 없다. 프라토 결정문, II.A절 참조. 위 각주 4. 결정문은 그 용어에 대한 운용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사실상 무국적자는 국적국 밖에 있으며,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이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호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 위법행위를 구제하기 위해 국적국이 행사하는 외교적 보호권뿐만 아니라 국적국으로의 귀환 등을 포함하는 외교적 및 영사의 전반적인 보호 및 지원 또한 뜻한다.

제3부 - 국내 차원에서 무국적자의 지위

A. 국제법과 무국적자의 지위

(1) 난민과 무국적자 지위의 유사성

125. 1954년 무국적협약에서 무국적자에게 보장한 지위는 1951년 난민협약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확립한 내용을 본보기로 한다. 이 두 협약을 비교해 보면, 1954년 무국적협약의 많은 조항이 1951년 난민협약의 상응하는 조항을 문자 그대로 혹은 최소한으로 변경하여 따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크게 1951년 무국적협약과 1954년 난민협약의 공통된 성안 과정 때문인데, 두 협약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1949년 임명한 무국적과 관련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Statelessness and Related Problems)에서 유래한다.⁷⁵ 결과적으로 1954년 무국적협약의 해석에는 1951년 난민협약의 교섭기록이 특히 중요하다.⁷⁶
126. 1951년 난민협약과 마찬가지로 1954년 무국적협약이 규정하는 권리의 국가나 유엔난민기구의 결정에 따라 무국적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1954년 무국적협약상 정의의 기준이 충족되는 순간부터 당사자는 무국적이며,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은 오로지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다. 대신에, 이 협약하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의 해당 국가 내에서 당사자의 현존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와 관련이 있고, 이는 수용국과 얼마나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었는지 그 수준에 따라 평가된다.
127. 1954년 무국적협약은 1951년 난민협약과 전반적으로 동일한 접근법을 공유하나, 몇 가지 중대한 차이가 있다. 1954년 무국적협약에는 강제송환의 금지(1951년 난민협약 제33조)와 불법 입국에 대한 처벌로부터의 보호(1951년 난민협약 제31조)가 없다. 나아가 근로의 권리와 결사의 권리에서는 1951년 난민협약의 상응하는 조항보다 더 낮은 처우 기준을 제시한다.⁷⁷ 또한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범위에서도 두 협약 사이에 차이가 있다.
128. 무국적자는 동시에 난민일 수도 있다.⁷⁸ 이 경우에는, 두 신청을 각각 평가하고 무국적과 난민 지위

⁷⁵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제248호(IX)(B), 1949년 8월 8일. 무국적자 보호는 처음에는 1951년 난민협약이 규정한 실질적 권리 대부분을 준용하는(*mutatis mutandis*) 의정서 형태로 다루고자 했으나, 후에 독자적 국제문서 형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문서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다. 성안 과정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교섭기록에 관한 진술 참조. 유엔난민기구,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Its History and Interpretation - A Commentary by Nehemiah Robinson*(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역사와 해석 - Nehemiah Robinson 논평), 1995 <http://www.unhcr.org/refworld/pdfid/4785f03d2.pdf> ("1954년 무국적협약 Robinson 논평").

⁷⁶ 특히 아래 132-139항의 1954년 무국적협약의 당사국과 맺은 유대관계의 수준에 따라 무국적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 참조.

⁷⁷ 그러나 1951년 난민협약처럼 1954년 무국적협약은 국가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있어서 모든 무국적자의 권리를… 그 국민의 권리와 동등하게 하기 위한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을 촉구한다. 1954년 무국적협약 제17조 제2항 참조.

⁷⁸ 위 15항에서 언급하였듯이, 1954년 무국적협약상 무국적자의 정의와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제3부 국내 차원에서 무국적자의 지위

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처우 기준이 강제송환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한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제공한다면, 국가는 해당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무국적자에게 이를 적용해야 한다.⁷⁹

(2) 1954년 무국적협약이 요구하는 처우 기준에 대한 개요

129. 1954년 무국적협약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는 국가가 무국적자에게 광범위한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1954년 무국적협약은 이 권리를 다음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 사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재산권, 결사의 권리, 사법접근권 포함),
- 유급직업(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자영업, 자유업 접근권 포함),
- 복지(배급, 주거, 공교육, 공적 구호, 노동법과 사회보장 포함);
- 행정적 조치(행정적 원조, 이동의 자유, 신분증명서, 여행증명서, 조세 부담, 자산의 이전, 추방, 귀화 포함)

130. 1954년 무국적협약은 처우의 최소 기준을 규정한다. 1951년 난민협약과 마찬가지로, 1954년 무국적 협약은 국가가 다음 척도에 따라 그 수혜자에게 처우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시민이나 기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처우와 무관하게 무국적자에게 제공하는 처우;
- 국민과 동일한 처우;
- 가능한 한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처우;
-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처우

131. 국가는 재량권을 발휘해 무국적자에게 국민의 지위에 더욱 가까운 지위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국제적 인권조약상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국가가 1954년 무국적협약의 권리 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할 책임은 협약 제2조상 무국적자가 그가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와 서로 균형을 이룬다.

(a) 점진적, 조건적 척도에 따른 권리

132. 1954년 무국적협약이 제공하는 권리는 무국적자가 해당 국가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의 정도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일부 조항은 1954년 무국적협약상 "무국적자"의 정의를 충족하며 국가의 관할권이

3
부

⁷⁹ 난민, 보충적 보호, 무국적 신청을 무국적 심사절차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밀유지의 필수적 보장에 관해 자세한 정보는 위 78-82항 참조.

미치거나 당사국 영역 내에 현존한다면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권리는 무국적자가 당사국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있는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지" 또는 "상주하는지"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국가는 무국적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무국적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1954년 무국적협약의 많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는 1951년 난민협약상 비호신청자에 대한 처우와 유사하다.

133. 개인이 당사국 관할권의 대상일 때 발생하는 1954년 무국적협약의 권리는 신분상 지위(제12조), 재산(제13조), 사법접근권(제16조 제1항), 배급(제20조), 공교육(제22조), 행정적 원조(제25조), 귀화(제32조)에의 권리로 포함한다. 물리적으로 당사국 영역에 현존하는 개인들에게 추가로 부여되는 권리에는 종교의 자유(제4조)와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권리(제27조)가 있다.
134. 1954년 무국적협약은 당사국 내에 "합법적으로 있는" (*lawfully in*, 불어로 "*se trouvant régulièrement*") 무국적자는 일련의 추가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합법적으로 있는" 개인을 위한 권리는 자영업에 관한 권리(제18조), 국내 이동의 자유(제26조) 그리고 추방으로부터의 보호(제31조)를 포함한다.
135. 무국적자들이 당사국 내에 "합법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국가 내 존재를 승인해야 한다. 이 개념은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영역 내에 있음이 알려져 있으나 모든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하지는 않은 경우 모두 포함한다.⁸⁰ 영역 내에 있은 기간은 일시적일 수 있다. 1954년 무국적협약의 용어에 대한 이 해석은 협약에 포함된 권리를 무국적자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협약의 목표와 목적과 일치한다. 협약 성안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⁸¹ 심사절차를 시작한 무국적 지위 신청자들은 그 절차로 인해 당사국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⁸⁰ 1951년 난민협약 또한 난민의 특정 권리 향유를 당사자가 해당 국가와 맺은 다양한 관계의 정도에 따라 조건적으로 규정한다. 유엔난민기구, *Note on International Protection*(국제적 보호에 관한 해설), A/AC.96/830, 1994년 9월 7일, 29항 참조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f0a935f2.html>. 1954년 무국적협약 *Robinson* 논평. 위 각주 75에 의하면, "[1954년 무국적]협약에서 사용한 "합법적으로 국가 내에 있는"이라는 표현은 난민협약의 표현과 동일한 의미라고 추정해야 한다". 제15조 논평 5항. 1951년 난민협약상 "합법적" 체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1951년 난민협약과 1954년 무국적협약의 공통된 성인 과정에 비추어 1954년 무국적협약 해석에도 적용된다. "... 통상적으로 '합법적'은 일반적인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문제의 체류가 알려져 있으나 당사자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금지되지는 않은, 즉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포함한다. "합법적으로 있음"에 관하여는 다음 참조. 유엔난민기구, *"Lawfully Staying" - A Note on Interpretation*"("합법적 체류" - 해석에 관한 해설), 1988년 5월 3일, 23항.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2ad93304.html>.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집행되지 않은 개인의 체류가 인도주의적 이유로 허가받은 스웨덴 사례에서, 자유권규약 제12조가 보호하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향유의 적용상,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영역 내에 있다"고 결정했다. *Celepli v. Sweden*, CCPR/C/51/D/456/1991, 1994년 7월 26일. <http://www.refworld.org/docid/51b6e7ad4.html> 9.2항.

[역주] 원문 "paragraph 8 of UNHCR ..."을 "23항"으로 수정.

⁸¹ 특히 제15조, 제18조 및 제31조에 관하여는 1954년 무국적협약 *Robinson* 논평. 위 각주 75 참조. 1951년 무국적협약과 1954년 무국적협약의 공통적 성인 과정과 1954년 무국적협약의 특정 조항이 얼마나 1951년 난민조약을 그대로 반영하는지를 고려하면, 프랑스의 제안으로 후에 초안 위원회가 채택한 문서에서 사용하는 "정규적 지위가 허가된(regularly admitted)"라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프랑스 대표단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주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정규적

- 있게" 된다.⁸² 반면에 해당 국가에서 이민법상의 지위가 없고 무국적 심사절차를 시작할 기회를 거부한 개인은 그 국가 내에 "합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136. 1954년 무국적협약은 당사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lawfully staying, 불어로 "*résidant régulièrement*") 무국적자에게 또다른 일련의 권리를 부여한다. 1954년 무국적협약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의 권리는 결사의 권리(제15조), 근로의 권리(제17조), 자유업 종사의 권리(제19조), 공공주택에의 접근권(제21조), 공적 구호에의 권리(제23조), 노동법 및 사회보장에의 권리(제24조), 여행증명서에의 권리(제28조)를 포함한다.⁸³
137. "합법적으로 체류" 요건은 영역 내 현존하는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예정한다. 그러나 이는 영주 형태 일 필요는 없다. 단기 방문이 아닌 한 국가가 허가한 더 짧은 체류기간으로도 충분하다. 거주 허가를 받은 무국적자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⁸⁴ 또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그 기간이 몇 달 이상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잠시 동안 입국 허가를 받은 방문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다. 심사절차를 통해 무국적자로 인정받았으나 거주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사람은 무국적 인정을 기다리며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보낸 시간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보통 판단한다.
138. 마지막으로 1954년 무국적협약이 명시하는 일련의 권리는 해당 국가 내에 "상주(habitually resident)"하거나 "거주 중(residing)"인 무국적자에게 제공되는 권리이다. "상주"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권리로는 저작권과 지식재산의 보호(제14조)와 법률구조 및 보석보증금 납부나 소송비용 담보 제공의 지원을 포함한 사법접근권(제16조 제2항)이 있다.
139. 무국적자가 "상주"하거나 "거주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해당 국가 내에 당사자가 계속적이고 안정

지위에 있다. 당시 거주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않았으나 이를 신청했고 그 접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상 마찬가지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신청이 거부된 사람만이 비정규적 지위에 있다." 난민과 무국적자에 관한 유엔 특별위원회, *Ad Hoc Committee on Statelessness and Related Problems, First Session: Summary Record of the Fifteenth Meeting Held at Lake Success*(무국적과 관련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기: 1950년 1월 27일 뉴욕 레이크 석세스에서 개최한 제15차 회의 요약 회의록), E/AC.32/SR.15, 1950년 2월 6일,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0aa1d5f2.html>. "정 규적으로 허가된"이라는 용어는 결국 1951년 난민협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있다"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⁸² 위 72항 참조. 무국적 심사절차가 절차 진행 중에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개인에 대한 되거 절차에 대해 절차 중지 효과(suspensive effect)를 가진다고 제시한다. 무국적 심사절차 중이기 때문에 국가 내에 "합법적으로 있다"고 간주되는 이 기간은 보통 짧다. 위 74-75항에서 설명하듯, 명백히 근거가 충분한 신청은 몇 달 내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며, 일차 결정은 통상적으로 신청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

⁸³ 2010년 4월 1일부터, 1954년 무국적협약에 따라 무국적자에게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포함해 국가가 발행한 모든 여행증명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기계판독이 가능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 출입국 간소화, 2005년 7월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유엔난민기구, *Guide for Issuing Machine Readable Convention Travel Documents for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난민과 무국적자를 위한 기계판독 가능한 협약상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한 지침), 2012년 10월, <http://www.refworld.org/docid/52b166a34.html> 참조.

⁸⁴ "체류(stay)"의 개념은 1951년 난민협약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왔으며 1954년 무국적협약 해석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체류'는 지속적인 거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분명히 경유를 위한 정거(transit stop)보다는 그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유엔난민기구, "합법적 체류" - 해석에 관한 해설, 23항, 위 각주 80 참조.

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상주"는 안정적인 실제의 거주로 이해된다. 이는 영주권을 부여 받은 무국적자를 포함하며, 또한 거주 허가 없이 국가에 정착한 개인 즉, 여러 해 동안 해당 국가에서 살아왔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3) 국제인권법

140. 또한 국내법상 무국적자의 지위는 국제인권법의 적용 가능한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은 국적이나 이민법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무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⁸⁵ 더욱이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은 국적이 없음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⁸⁶ 지위가 실질적으로 다른 집단 사이의 정당한 차등대우는 허용될 수 있다.⁸⁷ 따라서 국가는 특히 자국 영역 내 특별히 취약한 무국적자 집단을 돋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를 강구할 수 있다.
141. 국제인권법은 1954년 무국적협약이 규정한 보호 체계를 보완한다.⁸⁸ 몇몇 국제인권법 조항은 1954년 무국적협약과 동일한 권리를 명시하지만, 어떤 조항들은 더 높은 처우 기준을 제시하거나 무국적협약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권리를 제공한다.⁸⁹
142. 무국적자에게 특히 중요한 인권은 자유권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명시하는 "자국" 입국에 관한 권리이다. 이는 본인의 국적국에 입국할 권리 뛰어넘는 권리이다.⁹⁰ 이는 또한 국가에 특별한 유대관계

⁸⁵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5호 (자유권규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1986년 4월 11일, <http://www.refworld.org/pdfid/45139acf.pdf>.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자유권규약 당사국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법적 의무의 성질), CCPR/C/21/Rev.1/Add.13, 2004년 5월 26일, <http://www.refworld.org/docid/478b26ae2.html> 참조. 또한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증진보호 소위원회,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non-citizens, Final Report*(비시민권자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 E/CN./Sub.2/2003/23, 2003년 5월 26일, <http://www.refworld.org/pdfid/3f46114c4.pdf> 참조. 다만 국적의 보유는 인권의 온전한 향유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1954년 무국적협약의 형태로 한 무국적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유의해야 한다.

⁸⁶ 예를 들어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및 제26조 참조.

⁸⁷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차별금지), 1989년 11월 10일, <http://www.refworld.org/pdfid/453883fa8.pdf> 13항 참조. 또한 비시민권자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 요약서문 및 23항 참조. 위 각주 85.

⁸⁸ 이는 또한 1954년 무국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게 대안적인 규제 체계를 제공한다. 이 주제는 아래 166항에서 더 자세하게 논할 것이다.

⁸⁹ 예를 들어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의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보호가 있다. 지역적 인권조약 또한 관련이 있다.

⁹⁰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7호 (이동의 자유), CCPR/C/21/Rev.1/Add.9, 1999년 11월 2일, <http://www.refworld.org/docid/45139c394.html> 20항 참조; "제12조 제4항의 "어느 누구도(no one)"라는 표현은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국"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만 확인이 가능하다. "자국"의 범위는 "본인의 국적국"의 개념보다 넓다. 이는 공식적인 의미에서의 국적, 즉, 출생 또는 부여에 의해 취득한 국적에 제한되지 않는다. 자국이라는 말은 적어도 한 개인이 해당 국가와의 특별한 유대관계 또는 해당 국가와 관련이 있는 자격 때문에 그 개인을 단순한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국적을 박탈당한 한 국가의 국민, 그리고 국적국이 다른 국가적 실제로 통합되거나 이양되었을 때 국적이 거부된 개인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제12조 제4항의 표현은 장기간 거주한 국가의 국적 취득권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한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장기 거주자의 여타 범주를 아우르는 보다 광범위한 해석을 허용한다."

제3부 국내 차원에서 무국적자의 지위

를 맷은 사람에게 입국할 권리와 그에 따라 체류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사람에는 한 국가에서 장기간 자리를 잡은 무국적자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국적을 박탈당한 무국적자, 혹은 국가 승계로 상주하던 영역을 승계한 국가의 국적을 거부당한 무국적자 등이 포함된다.

143. 국제인권법에서의 이런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1954년 무국적협약은 다른 문서는 다루지 않는 무국적에 특정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하며, 관련하여 무국적자를 위한 신분증명서와 여행증명서 그리고 행정적 원조에 관한 조항이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무국적협약 조항은 일부 인권조약과는 달리 공공 비상사태 중에도 의무로부터의 이탈(derogation)을 허용하지 않으며, 인권법상 상응하는 기준보다 더 관대한 여러 기준을 제시한다.⁹¹

B. 아주 상황에 있는 사람

(1) 무국적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

144. 이 편람 도입에서 논의했듯이, 1954년 무국적협약이 무국적 심사절차를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국가는 협약에 따라 적절한 기준의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무국적자를 확인할 육시적 책임이 있다.⁹² 아래에서는 본인의 무국적에 대한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적절한 지위에 대해 논의한다.
145. 결정을 기다리는 개인은 최소한 관할권 또는 영역 내 현존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모든 권리와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을 위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⁹³ 따라서 그 지위는 그 중에서도 신분증명서, 자영업의 권리, 이동의 자유와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⁹⁴ 앞서 언급한 무국적협약의 권리는 1951년 난민협약과 거의 동일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국가에서 심사 중인 비호신청자와 동등한 기준의 처우를 무국적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146. 또한, 무국적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의 지위는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보호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지원 등과 같은 적용 가능한 인권과 반영해야 한다.⁹⁵ 무국적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참여할 수 있게 허가하면 국가 지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당사자의 존엄성과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국적자 인정을 받은 사람 - 거주의 권리

147. 1954년 무국적협약은 국가가 무국적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거주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권리 부여는 무국적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이는 심사절차

⁹¹ 예를 들어,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한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는 자유권규약 제13조의 절차적 보호장치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1954년 무국적협약 제31조는 이에 더하여 추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한한다.

⁹² 위 8항 참조.

⁹³ 위 134-135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이는 개인이 다른 맥락에서 무국적 신청을 제기할 때 전담 심사절차가 없는 국가에서도 또한 적용될 수 있다.

⁹⁴ 위 72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참조.

⁹⁵ 위 140-141항 참조.

가 있는 국가의 관행에 반영되어 있다. 거주할 권리가 없으면 당사자는 지속적인 불안정한 상황의 위험에 처하며, 1954년 무국적협약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148. 따라서 무국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 2년간 유효한 거주 허가를 부여하도록 권장하지만, 5년 등 장기간의 거주 허가가 안정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허가는 간접이 가능해야 하며, 1954년 무국적협약 제32조가 명시한 용이한 귀화 가능성은 제공해야 한다.
149. 무국적으로 인정된 사람이 후에 국적법 변경 등으로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 또는 재취득한다면, 1954년 무국적협약에 따라 그 무국적 지위는 중지된다. 이는 무국적 지위를 근거로 획득한 거주 허가의 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당사자가 확립한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형성하여 온 정도 등, 국제인권법상 취득한 권리와 사정을 비례성 심사 시 고려해야 한다.
150. 1954년 무국적협약하에서 무국적자 인정은 거주의 권리에 더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 또한 유발한다.⁹⁶ 따라서 근로의 권리,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여행증명서 또한 반드시 거주 허가와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151. 1954년 무국적협약은 가족결합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그 영역 내 무국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재결합을 추진할 것을 장려한다.⁹⁷ 실제로 일부 국가는 관련된 국제적 또는 지역적 인권조약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⁹⁸
152. 무국적협약에서 "상주"하는 개인에게로 한정된 두 조항은 무국적 인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않는다.⁹⁹ 그러나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해당 국가에 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

(3) 타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53. 무국적 인정을 받은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타국에서 1954년 무국적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를 취득할 현실적 전망이 있는 경우, 수용국은 재량에 따라 위 148-152항에서 기술한 것보다 더 임시적인 성격의 지위를 제공할 수 있다. 편의 혹은 선택에 따라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고려가 요구된다.¹⁰⁰
154. 이 경우, 개인이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현실적 전망이 실제로 있는지 판단할 기준을 염격하게

⁹⁶ 위 136-137항 참조.

⁹⁷ 1951년 난민협약의 맥락에서 가족결합에 대한 설명은 난민 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편리과 지침, 181-188항 참조. 위 각주 47. 무국적자의 부양가족이 무국적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954년 무국적협약하에서 "무국적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각 부양가족의 국적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무국적이 아니라도, 당사국 영역 내의 무국적자의 부양가족에게 거주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족결합을 도울 수 있다.

⁹⁸ 국제인권 의무가 어떻게 1954년 무국적협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보완하는지에 관해서는 위 140-143항 참조.

⁹⁹ 위 138-139번 문단 참조.

¹⁰⁰ 아래 161-162항 참조.

제3부 국내 차원에서 무국적자의 지위

해석하도록 주의해야 한다.¹⁰¹ 유엔난민기구의 견해로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해 무국적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간단하고, 신속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는 절차를 통해 국적 취득 또는 재취득이 가능한 때; 또는
 - 즉각 귀환이 가능한 종전의 상주국에서 영주 지위를 누릴 때.
155. 국적 취득 또는 재취득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물리적 및 경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절차적 단계와 필요한 증거와 관련하여 간단한 절차를 반드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적 취득/재취득 절차는 신속해야 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어서 앞서 언급한 요건을 갖추면 그 결과가 보장되어야 한다.¹⁰²
156. 반대로 어떤 국적 취득 절차는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국적자에게 임시적인 지위만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귀화 절차에 접근할 수 있으나 그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있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적 취득 요건이 모호한 절차나 합법적 입국과 거주가 보장되지 않는 종전의 국적국에 물리적으로 현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절차 또한 충분하지 않다.
157. 당사자가 종전의 상주국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이는 1954년 무국적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 기회가 반드시 함께 보장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는 타국에서 영주 지위를 이미 누리고 있거나, 도착 시 이를 부여받을 사람으로서, 그 지위에 온전한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함께 제공되며, 해당 국가의 국적을 부여받을 합리적인 전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¹⁰³ 단기간 타국에 귀환할 수 있는 허가로는 충분치 않다.

(a) 국적 상실/박탈이나 선의의 자발적 포기로 인한 무국적의 경우

158. 많은 경우, 개인은 국적 취득이나 회복 시도나, 종전의 상주국으로 귀환하기 위한 작업에 협조할 것이다.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했거나 상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이 다른 국

¹⁰¹ 나아가 개인이 어디에서도 법적 지위 없이 방치되지 않게 방지하고, 거주 허가를 정당화할 모든 특수한 상황을 적절히 검토하도록 보장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¹⁰² 이에 대한 예시로는 과거 국민이었던 사람이 가까운 영사관에서 출생증명서 또는 취소/만료된 여권을 제시한 후 선언서에 서명만 하면 관할 정부기관이 국적을 회복할 의무가 발생해 당사자가 국적을 재취득하는 절차가 있다. 유사한 절차는 국적을 취득할 선택권에 따른 등록 또는 그 행사가 있을 수 있다.

¹⁰³ 유엔난민기구, *Position on the return of persons not found to b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UNHCR's Role*(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출신국 귀환에 대한 입장: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2010년 11월, <http://www.unhcr.org/refworld/pfdid/4cea23c62.pdf>, 20-22항. 이는 이 편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적 취득을 기대하여 의식적으로 그리고 선의로 종전의 국적을 포기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 국적 법이 허술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국적을 신청하기 위해 본인의 국적을 포기했으나, 다른 국적 을 취득할 수 없어서 무국적 상황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159. 이 경우 최선의 해결책은 종전의 국적 재취득이다. 이러한 개인이 무국적이지만 종전의 국적을 재취 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주 허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일종의 이민 지위를 제공해 당사자가 해당 영역 내에 잠시간 체류하면서 타국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허락할 수 있다. 이런 임시적인 허가는 몇 달 정도로 짧을 수도 있으며, 거주 허가 시 요구 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는 심사 과정 중에 제공되는 지위에 더 가까 운 수준의 지위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160. 입국/재입국 또는 국적 재취득이 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임시 체 류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재입국 또는 국적 재취득 완료를 위한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과 무국적자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기한 만료 시점에, 당사자의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국/재입국 또는 국적 재취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당사국은 무국적자 인정 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지위, 즉, 근로의 권리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권리와 포함한 모든 권리를 수반하는, 간접 가능한 거주 허가 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b) 편의상 또는 선택에 따른 자발적 국적 포기로 인한 무국적의 경우

161. 어떤 사람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원치 않거나 혹은 국적 포기로 타국에서 보호 지위를 부여 받을 것이라고 믿어서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한다.¹⁰⁴ 이런 상황에서는 종전의 국적국으로의 재입국 과 해당 국적의 재취득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다른 국가로의 재입국이나 국적 재취득을 위한 당사 자의 협조가 부족할 때, 정부기관은 당사자의 입국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국가와 자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종전의 국적국이 국제법상 지는 다른 의무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적 포기에 따른 무국적의 방지 및 자국 입국의 권리와 관련한 의무 등을 포함한다.¹⁰⁵

¹⁰⁴ 국제법은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나, 이는 개인이 특정 국적을 선택할 권리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통제 외적인 요인, 즉, 혈통, 영역 내 출생 혹은 국가 승계 시 영역 내 거주 등을 근거로 한 국가의 자동적 국적 부여 가 널리 수용되고 있다.

¹⁰⁵ 특히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 및 자유권규약 제12조 제4항 참조. 이에 더해, 선의의 원칙에 입각 한 국가 간 우호적 관계와 협조는 이런 상황에서 재입국을 요구한다. 현재 수많은 국가 간 협정은 과거 국민 또는 상주자였던 사람을 포함한 무국적자의 재입국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난민기구가 맡을 수 있는 역할 이 있다.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귀환에 관한 2003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96호(LIV)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f93b1ca4.html>, (i)항 참조. 집행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귀환 시 국가의 노력을 유엔난민기구가 다음과 같이 보완하도록 권고한다: (i) 귀환하는 국민을 수용할 국가의 책임과 관련한 원칙 그리고 무국적 감소에 관한 원칙을 국가와 협력해 촉진한다; (ii)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귀환 수용에 대해 명확한 공개적 입장장을 취한다; (iii) 국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시민권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법령이 당

제3부 국내 차원에서 무국적자의 지위

162. 국가는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체류 허가를 부여하거나 간신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람은 1954년 무국적협약이 명시한 모든 권리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지도 않다. 다른 모든 보호에 대한 장애가 없으면, 예를 들어 종전의 국적국이 동시에 종전의 상주국이면서 그 정부기관이 당사자에게 영주 지위를 부여할 준비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귀환도 배제될 수 없다.

(c) 지역적 유대관계에 대한 고려

163. 당사자가 장기 거주와 가족관계 등으로 수용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국적자 인정 시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지위, 즉 간신 가능한 거주 허가와 이에 수반되는 권리 전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¹⁰⁶ 어떤 경우에는, 사생활, 가족생활 혹은 주거에 대한 위법한 또는 자의적인 간섭을 금지하는 인권법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¹⁰⁷

C. “자국” 내에 있는 사람

164. 위 142항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무국적자는 자유권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국”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한 국가에서, 주로 본인의 출생국에서 장기적으로 상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은 해당 국가에 입국 및 체류할 권리가 있으며, 이 점은 당사자의 국내법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이 해당 국가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경우 타국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당사를 사회에 온전한 통합시켜야 할 정치적 및 도덕적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자국” 내에서 무국적이라는 사실은 국적법의 형성과 적용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그 국가에서 출생하고 그 국가에서만 거주해왔지만 국적을 거부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기도 한다.¹⁰⁸

165. “자국” 내에 있는 이러한 개인에게 적절한 지위는 해당 국가의 국적이다. 위의 제2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경우 개인이나 주민 집단의 지위 인정을 위한 올바른 체계는 국적 회복 또는 부여를 위한 체계이다.¹⁰⁹ 무국적 심사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이러한 체계를 통해 보호를 구해야만 한다면, 인정 시 부여되는 지위는 최소한 국적에 용이하게 접근

사자가 다른 국적을 취득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 국적 표기를 허용하고, 국적국으로의 귀환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¹⁰⁶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그 관계가 매우 깊어 당사자가 “자국”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

¹⁰⁷ 위 140-143항 참조.

¹⁰⁸ 이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는 국적의 자의적 박탈 금지 그 중에서도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항, 그리고 국제인권법상의 차별금지, 특히 강행규범인 인종차별의 금지가 있다. 강행규범의 성질에 관하여는 위 각주 13에서 논의한다.

¹⁰⁹ 위 58-61항 참조.

할 수 있는 영주를 포함해야 한다.¹¹⁰

D. 1954년 무국적협약이 다루지 않는 무국적자의 지위

166. 1954년 무국적협약의 무국적자 정의를 충족하는 많은 사람이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가 자국 영역 내 무국적 문제를 다루는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하며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정할 때 무국적협약의 기준과 당사국의 관행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 무국적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무국적자에게 신분증명서와 여행증명서를 제공하는 관행에 주목할 수 있으며. 실제 몇몇 비체약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조치를 채택했다. 이에 더해, 모든 국가는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보호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그리고 원래 살던 곳에서의(*in situ*) 무국적인 사람의 경우 “자국”에 입국 및 체류할 권리 (자유권규약 제12조 제4항) 등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¹¹¹
167. 사실상(*de facto*) 무국적자 또한 1954년 무국적협약의 대상이 아니다.¹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국적자는 본인의 국적국에 즉각 귀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임시적인 체류를 허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위 159항에서 언급한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권고한 것과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의 임시적인 조치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예를 들어 영사의 지원이 개선되거나 당사자를 위한 영사의 지원 정책이 변경된다면 귀환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8. 국가의 보호 가능성이 좀 더 요원한 경우, 사실상 무국적자에게 1954년 무국적협약에 따라 무국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과 유사한 거주 허가를 부여해 그 지위를 신장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사실상 무국적자가 국적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국적국으로의 귀환이 바람직한 영구적 해결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귀환을 가로막는 장애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귀화를 통한 현지 해결책이 실용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일 수 있다.

¹¹⁰ 국가가 자국 영역 내에 무국적 주민을 만든 경우, 무국적 심사절차의 도입이나 권리에 따른 무국적 지위 부여를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경우, 해당 주민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유엔난민기구의 노력은 권리옹호를 넘어, 국적 부여를 통한 당사자와 국가 사이의 유대관계 인식을 목표로 하는 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과 운용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¹¹¹ 아래 164-165항 참조.

¹¹² 위 7항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상(*de facto*) 무국적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의는 없다. 이 용어를 정의하려는 최근의 노력에 의하면 사실상 무국적자들은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유효한 이유로 이를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다. 프라토 결정문, II.A절, 위 각주 4.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운용상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무국적자는 국적국 밖에 있으며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이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호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위법행위를 구제하기 위해 국적국이 행사하는 외교적 보호권뿐만 아니라 국적국으로의 귀환 등을 포함하는 외교적 및 영사의 전반적인 보호 및 지원 또한 뜻한다.”

부록 I -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전문

모든 체약국은,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12월 2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가 차별 없이 기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례에 걸쳐서 무국적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무국적자가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고,

난민이기도 한 무국적자만이 1951년 7월 28일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해당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무국적자가 다수임을 고려하고,

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개선할 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무국적자”라는 용어의 정의

1. 이 협약의 적용상,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외에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로서 그러한 보호와 원조를 받는 한에 있어서;

(ii) 거주를 정한 국가의 관할 정부기관에 의하여 그 국적의 보유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

(iii) 다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자: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 문서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b)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부
록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제2조

일반적 의무

모든 무국적자는 그가 있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뿐만 아니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3조

비차별원칙

체약국은 무국적자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 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종교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는 무국적자에게 그의 종교를 수행할 자유 및 자녀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호의적인 대우를 한다.

제5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하는 권리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과는 별도로 체약국이 무국적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동일한 사정하의”라는 용어

이 협약의 목적상, “동일한 사정하의”라는 용어는 그 성격상 무국적자가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무국적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 그 권리의 향유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체재 또는 거주의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여)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무국적자에게 이 협약이 보다 우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한다.

2. 모든 무국적자는 체약국 영역 내에서 3년간 거주한 후에 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발효일자에 상호주의의 적용 없이 무국적자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이익 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 없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국적자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협약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도 적용한다.

제8조

예외적 조치로부터의 면제

체약국은, 외국의 국민 또는 국민이었던 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질 수 있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무국적자가 해당 외국의 국적을 과거에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국의 법률로 인하여 이 조항에 언급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무국적자에게 유리하게 예외적 조치로부터의 면제를 인정한다.

제9조

잠정조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개인에 관하여 국가 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보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잠정 조치는 특정 개인이 실제로 무국적자인지 여부, 또한 그에 관하여 그러한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제10조

거주의 계속

부
록

1. 무국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실향하였으며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서 그 영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강제 체류기간은 그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무국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체약국 영역에서의 강제 실향 후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거주 목적으로 그 영역 내에 다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 실향 전후의 거주기간은 계속적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무국적 선원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무국적자

의 경우에,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정착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2장: 사법상 지위

제12조

신분상 지위

1. 무국적자의 신분상 지위는 그의 주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
2. 무국적자가 이전에 취득한 권리로서 신분상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 특히 혼인에 수반되는 권리, 해당 권리가 그 체약국의 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중되며, 단, 해당 권리가 그가 무국적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어야 한다.

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무국적자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제공한다.

제14조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무국적자는 발명, 의장 또는 모형, 상표, 상호와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학적, 예술적 및 과학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그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받는다. 기타 체약국의 영역에서도, 그가 상주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받는다.

제15조

결사의 권리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국가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비정치적 및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제공한다.

제16조

사법접근권

1. 무국적자는 모든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운 사법접근권을 가진다.
2. 무국적자는 그가 상주하는 체약국에서 법률구조 및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포함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향유한다.
3. 무국적자는 그가 상주하는 국가 외의 다른 체약국에서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그가 상주하는 체약국의 국민이 제공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받는다.

제3장: 유급직업

제17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국가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있어서 모든 무국적자의 권리, 특히 노동인력 수급계획이나 이주 계획에 따라 그 영역 내에 입국한 무국적자의 권리를 그 국민의 권리와 동등하게 하기 위한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18조

자영업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무국적자에게 본인의 뜻대로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상업 분야에서 종사할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제공한다.

부
록

제19조

자유업

각 체약국은 그 국가의 관할기관이 인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제공한다.

제4장: 복지

제20조

배급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 전체에 적용되는 배급제도가 있는 경우, 무국적자는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받는다.

제21조

주거

체약국은 주거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제공한다.

제22조

공교육

- 체약국은 무국적자에게 초등교육에 관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한다.
- 체약국은 무국적자에게, 특히 교육에의 접근성, 외국 학교의 학업증명서, 학위수여증 및 학위의 인정, 수업료와 공납금의 면제 및 장학금의 수여에 관련되어 초등교육 외의 교육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제공한다.

제23조

공적 구호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공적 구호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한다.

제24조

노동법과 사회보장

-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한다.
 - 보수의 일부가 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노동시간, 초과 근무 시 조치, 유급휴가, 재택근무의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 및 노사의 단체교섭에 기인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는 경우.

- (b) 사회보장 (업무상 상해, 직업병, 출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및 국내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고에 관한 법 규정),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 (i) 취득한 권리와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ii) 거주국의 국내 법령은 공공기금으로부터 전액 지급되는 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그리고 일반 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기여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2.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사망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수혜자의 거주지가 체약국 영역 밖에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취득한 권리와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래 체결할 협정의 서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무국적자가 충족하고 있는 한 그 협정에 따른 이익을 무국적자에게도 제공한다.
4. 체약국은 체약국과 비체약국 간의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는 유사한 협정에 따른 이익을 가능한 한 무국적자에게도 확대하여 제공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5장: 행정적 조치

제25조

행정적 원조

1. 무국적자가 그의 권리 행사에 통상적으로 외국 정부기관의 원조가 필요하며, 그가 해당 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무국적자가 거주하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관이 그러한 원조를 그에게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기관 또는 기관들은 무국적자에게,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본인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는 것과 유사한 문서 또는 증명서를 무국적자에게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 이를 발급하도록 한다.
3. 이와 같이 발급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이 본인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는 공문서를 대신하며, 또한 반증이 없는 한 공신력을 가진다.
4. 빈곤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러한 수수료는 적절한 금액이어야 하고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응하여야 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은 제27조 및 제28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서 거주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27조

신분증명서

체약국은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 영역 내의 무국적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8조

여행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영역 밖으로의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여행증명서에 관하여는 이 협약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는 다른 모든 무국적자에게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또한 특히 그 영역 내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그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29조

조세 부담

1. 체약국은 무국적자에게 유사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할 관세, 과세 또는 조세 등 이외의 별도의 것이나 고율의 것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전 항은 외국인에게 신분증명서를 포함한 행정상 문서를 발급함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령을 무국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자산의 이전

1. 체약국은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무국적자에게 그가 그 영역 내에 반입한 자산을 재정착을 목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입국이 허가된 다른 국가에서 재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의 이전 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자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31조

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무국적자를 추방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무국적자의 추방은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다. 달리 국가 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무국적자는 본인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관할 기관 또는 관할 기관이 특별히 지명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허용된다.
3. 체약국은 그러한 무국적자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허용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2조

귀화

체약국은 무국적자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그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6장: 최종조항

제33조

국내법에 관한 정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체약국이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송부한다.

부
록

제34조

분쟁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분쟁 당사국 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제35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국제연합 본부에 1955년 12월 31일까지 개방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의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a) 국제연합 회원국;
 - (b)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은 국가; 및
 - (c) 국제연합 총회가 서명 또는 가입초청을 발송한 국가.
3. 이 협약은 비준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이 협약은 이 조 제2항에 열거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

지역적 적용조항

1. 모든 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그 국가가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협약을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관련 국가에 대하여 발효할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그 후의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 또는 관련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날 중 늦은 날부터 발효한다.
3. 각 관련 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이 확대되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관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헌법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그 영역의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37조

연방조항

체약국이 연방제 국가이거나 또는 단일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a)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 범위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연방 정부의 의무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 (b) 이 협약의 규정 중 연방의 헌법 체계상 구성국, 도 또는 주의 입법권 범위에 속하고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 연방 정부는 구성국, 도 또는 주의 적절한 정부기관에게 가능한 한 빨리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 (c) 이 협약의 체약국인 연방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발송된 이 협약의 다른 체

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특정 규정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률 및 관행에 관하여 설명을 제공하여, 그 규정이 입법조치 또는 다른 조치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제38조

유보

1. 모든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 및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를 제외한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모든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39조

발효

1. 이 협약은 여섯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여섯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제40조

폐기

1. 모든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그러한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해당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제36조에 따라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국가는 그 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해당 영역에 이 협약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부
록

제41조

개정

1. 모든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그러한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권고한다.

제4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5조에서 규정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a) 제35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36조에 따른 선언 및 통고;
- (c) 제38조에 따른 유보 및 철회;
- (d) 제39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자;
- (e) 제40조에 따른 폐기 및 통고;
- (f) 제41조에 따른 개정의 요청;

이상의 합의에 기인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은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4년 9월 28일 뉴욕에서 단일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등본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제35조에서 규정한 비회원국에 송부한다.

부속서

제1항

1. 이 협약 제28조에서 규정한 여행증명서는 그 소지자가 1954년 9월 28일 자 협약의 규정에 따른 무국적자임을 표시한다.
2. 그러한 증명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며, 그 중 하나는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한다.
3. 체약국은 이 부속서에 첨부한 여행증명서 양식의 채택이 요망됨을 고려한다.

제2항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동은 부모 중 일방의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다른 성인의 여행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제3항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국민의 여권 발급에 대한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항

특별한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도록 발급한다.

제5항

증명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2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갖도록 한다.

제6항

1. 증명서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소지자가 다른 영역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의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 그 발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은 동일한 조건에 따라 기존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2.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은 자국의 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3.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더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무국적자에 대한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의 갱신, 연장 또는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7항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부
록

무국적자가 가기를 원하는 국가의 관할 정부기관은 그의 입국을 허가할 용의가 있으며 그 경우 사증이 필요하다면, 그가 소지한 증명서에 사증을 부여한다.

제9항

1. 체약국은 최종 목적지인 국가 영역의 사증을 취득한 무국적자에게 통과사증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통과사증의 발급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의 발급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10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 여권의 사증에 대한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항

무국적자가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책임은 제28조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그 영역의 관할기관에 있고, 그 무국적자는 해당 기관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항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종전의 증명서를 회수하고, 증명서에 이를 반송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이를 반송한다.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발급기관은 종전의 증명서를 회수 및 취소한다.

제13항

1.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급한 여행증명서는 반대되는 기재사항이 없는 한, 소지자가 유효기간 동안 언제든지 발급한 국가의 영역에 재입국할 권리를 부여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지자가 발급한 국가에 귀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이는 무국적자가 여행할 것을 신청한 국가가 재입국할 권리를 부여하는 여행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체약국은 전 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명서의 소지자에게 그 영역로부터의 출국 또는 영역에의 귀환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항

제13항의 규정만을 예외로 하고,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국 영역에의 입국, 통과, 거주, 정착 및 그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이의 기재사항은 소지자의 지위, 특히 국적을 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항

증명서의 발급은 소지자에게 이를 발급하는 국가의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보호를 결코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기관에게 그 사실에 의하여 보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부 록

여행증명서 양식

[o] 편람에서는 미첨부]

부
록

부록 II -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체약국은.

1954년 12월 4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896호(IX)에 의거하여 활동하여,

국제협약을 통한 무국적자의 감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체약국은 자국 영역에서 출생하여 다른 방법 없이는 무국적이 되는 자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 한다. 그 국적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a)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출생 시, 또는

(b) 국내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해당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적절한 정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함에 따라 부여한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신청은 거부되지 아니한다.

이 항 제(b)호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체약국은 국내법에서 규정한 연령과 조건에 따라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서도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2. 체약국은 이 조 제1항 제(b)호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조건으로 하여 국적을 부여 할 수 있다.

(a) 그 신청이 해당인이 별도의 법적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주어지도록 적어도 18세 이전에는 시작되며 21세 이전에는 종료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

(b) 해당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5년 그리고 통산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국이 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체약국 영역 내에서 상주하였을 것.

(c) 해당인이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

(d) 해당인이 이제까지 무국적이었을 것.

3. 이 조 제1항 제(b)호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 영역에서 출생하였고 모가 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적출 아동은, 그가 다른 방법 없이는 무국적이 될 것이라면 출생 시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다.

4. 체약국은 다른 방법 없이는 무국적이 될 것이며 그 영역 내에서 출생하였으나 국적 신청 연령이 도과하였거나 필요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만약 그의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앞서 언급된 체약국의 국적을 가졌었다면 그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그의 출생 당시 그의 부모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해당인이 부 또는 모 어느 일방의 국적을 따를 것인지의 문제는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한다. 국적 부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적절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신청은 거부되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은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조건으로 하여 국적을 부여한다.

- (a) 그 신청을 신청인이 적어도 23세 이상으로 체약국이 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제출하였을 것.
- (b) 해당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국이 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체약국 영역 내에서 상주하였을 것.
- (c) 해당인이 이제까지 무국적이었을 것.

제2조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발견된 기아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체약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 의하여 그 영역 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협약에 따른 체약국의 의무를 결정할 목적상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의 출생은 그 선박의 기국 또는 그 항공기 등록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1. 체약국은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방법 없이는 무국적이 되는 자에 대하여, 만약 그의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졌었다면, 그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그의 출생 당시 그의 부모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해당인이 부 또는 모 어느 일방의 국적을 따를 것인지의 문제는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른 국적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부
록

- (a)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출생 시, 또는.
- (b) 국내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해당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적절한 정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여한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신청은 거부되지 아니한다.

2. 체약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조건으로 하여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 (a) 그 신청이 신청인이 적어도 23세 이상으로 체약국이 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할 것.
- (b) 해당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국이 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체약국 영역 내에서 상주하였을 것.
- (c) 해당인이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 (d) 해당인이 이제까지 무국적이었을 것.

제5조

1. 체약국의 법률이 혼인, 혼인 종료, 준정, 인지 또는 입양으로 인한 신분 변경에 따른 국적의 상실을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상실은 타국 국적의 보유 또는 취득을 조건으로 한다.

2. 비적출자가 부의 인지의 결과로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에게는 적절한 정부기관에 서면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국적을 회복할 기회가 제공되며, 이때의 신청 조건은 이 협약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건보다 엄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

체약국의 법률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도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상실은 그들의 타국 국적의 보유 또는 취득을 조건으로 한다.

제7조

1.

- (a) 체약국의 법률이 국적의 포기를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포기는 해당인이 타국 국적을 보유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국적의 상실로 이어지지 아니한다.
- (b) 이 조 제(a)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외국에 귀화하고자 하는 체약국 국민은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보장받지 아니하는 한 그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약국 국민은 출국, 해외 거주, 등록불이행, 기타 유사한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여 무국적이 되지 아니한다.

4. 귀화자가 적어도 7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체약국의 법률이 규정한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면서 그의 국적을 유지할 의사를 적절한 정부기관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5. 영역 밖에서 출생한 체약국 국민의 경우, 그가 성년에 도달한 지 1년 이후에 그 국적을 유지하는지에 관하여 체약국 법률은 당시 그 국가의 영역 내 거주 또는 적절한 정부기관에의 등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국적 상실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조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국 국적의 상실로 인해 무국적이 될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조

1. 체약국은 해당인이 국적의 박탈로 인하여 무국적이 된다면 그의 국적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체약국의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

(a)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적 상실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b) 거짓 또는 기망으로 취득한 국적인 경우.

3.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이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적을 박탈할 권리를 유지할 의사를 밝혔고, 그 사유를 당시의 국내법에 명시하고 있었다면 그 국적을 박탈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a) 체약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게

(i) 체약국의 명시적인 금지를 무시하여 타국에게 역무를 제공하였거나,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타국으로부터 보수를 받았거나, 계속 받고 있는 자.

(ii) 체약국의 중대한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자.

부
록

(b) 타국에 대한 충성을 선서하였거나 공식 선언을 한 경우, 또는 체약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본인의 결정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4. 체약국은 이 조 제2항과 제3항이 허용하는 국적을 박탈할 권리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법률은 해당인에게 법원 또는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체약국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어느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

제10조

1. 영역의 이양을 규정하는 체약국 간의 모든 조약은, 이양의 결과 어떠한 자도 무국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목적의 조항을 포함한다. 체약국은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와 체결하는 조약에도 위와 같은 조항을 포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영역을 이양받거나 달리 취득하는 체약국은 영역 이양이나 취득의 결과로 다른 방법 없이는 무국적이 되는 자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제11조

체약국은 이 협약의 여섯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가능한 한 즉시 국제연합 내에 이 협약상의 이익을 청구하는 자가 본인의 청구의 심사를 신청하고 적절한 정부기관에 대한 청구 제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추진한다.

제12조

1. 이 협약 제1조 제1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출생 시 국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체약국과 관련하여, 제1조 제1항 또는 제4조의 규정은 경우에 따라 이 협약의 발효 후는 물론 발효 전에 출생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협약 제1조 제4항의 규정은 이 협약의 발효 후는 물론 발효 전에 출생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3.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발효 후 체약국 내에서 발견된 기아에게만 적용된다.

제13조

이 협약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이후 시행될 체약국의 법률에 포함되었거나, 또는 현재 발효되었거나 이후 발효될 2개국 이상의 체약국 간의 협약, 조약 및 협정에 포함된 무국적의 감소를 더욱 촉진시키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해결할 수 없는 체약국 간의 모든 분쟁은 분쟁 당사국 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제15조

1. 이 협약은 체약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자치지역, 신탁통치지역, 식민지, 기타 본토 외 영역에 적용된다. 해당 체약국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그러한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의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될 본토 외 영역을 선언한다.

2. 국적과 관련하여 본토 외 영역이 본토 영역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이 협약이

부 록

그 영역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체약국 또는 본토 외 영역의 헌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본토 외 영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경우, 그 체약국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토 외 영역의 필요한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러한 동의를 얻으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이 협약은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부터 통고에 명시된 영역에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체약국은 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 협약 적용에 필요한 동의가 보류 중에 있는 본토 외 영역과의 협의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

1.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국제연합 본부에 1961년 8월 30일부터 1962년 5월 31일까지 개방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a) 국제연합 회원국;

(b) 향후 무국적자 근절 또는 감소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은 국가;

(c) 국제연합 총회가 서명 또는 가입하도록 초청한 국가.

3. 이 협약은 비준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이 협약은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1. 모든 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부
록

2. 이 협약에 대한 기타의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

1. 이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2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의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중 늦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19조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해당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체약국의 본토 외 영역에 적용되었을 경우, 그 체약국은 이 후 언제든지 해당 영역의 동의에 따라 그 영역에 대하여만 별도로 이 협약의 폐기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사무총장은 이 통고와 접수한 일자를 다른 모든 체약국에게 통보한다.

제20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모든 회원국과 제16조에서 규정한 비회원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a) 제16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17조에 따른 유보;
- (c) 제18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 (d) 제19조에 따른 폐기.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늦어도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제11조에 따라 동조에서 규정한 기구의 설치 문제에 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21조

이 협약은 발효일자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된다.

이상의 합의에 기인하여, 아래의 서명자인 전권대사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1년 8월 30일 뉴욕에서 단일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등본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제16조에서 규정한 비회원국에 송부한다.

부록 III -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목록

국가명	1954년 무국적협약*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
알바니아	2003년 6월 23일 (가)	2003년 7월 9일 (가)
알제리	1964년 7월 15일 (가)	
앤티가바부다	1988년 10월 25일 (승)	
아르헨티나	1972년 6월 1일 (가)	
아르메니아	1994년 5월 18일 (가)	1994년 5월 18일 (가)
호주	1973년 12월 13일 (가)	1973년 12월 13일 (가)
오스트리아	2008년 2월 8일 (가)	1972년 9월 22일 (가)
아제르바이잔	1966년 8월 16일 (가)	1996년 8월 16일 (가)
바베이도스	1972년 3월 6일 (승)	
벨기이에	1960년 5월 27일 (비)	
벨리즈	2006년 9월 14일 (가)	
베냉	2011년 12월 8일 (가)	2011년 12월 8일 (가)
볼리비아 (다민족국)	1983년 10월 6일 (가)	1983년 10월 6일 (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3년 9월 1일 (승)	1996년 12월 13일 (가)
보츠와나	1969년 2월 25일 (승)	
브라질	1996년 8월 13일 (비)	2007년 10월 25일 (가)
불가리아	2012년 3월 22일 (가)	2012년 3월 22일 (가)
부르키나파소	2012년 5월 1일 (가)	

부
록

* 가입(가), 승계(승), 비준(비)

캐나다		1978년 7월 17일 (가)
차드	1999년 8월 12일 (가)	1999년 8월 12일 (가)
중국 [†]		
코스타리카	1977년 11월 2일 (비)	1977년 11월 2일 (가)
코트디부아르	2013년 10월 3일 (가)	2013년 10월 3일 (가)
크로아티아	1992년 10월 12일 (승)	2011년 9월 22일 (가)
체코공화국	2004년 7월 19일 (가)	2001년 12월 19일 (가)
덴마크	1956년 1월 17일 (비)	1977년 7월 11일 (가)
에콰도르	1970년 10월 2일 (비)	2012년 9월 24일 (가)
피지	1972년 6월 12일 (승)	
핀란드	1968년 10월 10일 (가)	2008년 8월 7일 (가)
프랑스	1960년 3월 8일 (비)	
조지아	2011년 12월 23일 (가)	
독일	1976년 10월 26일 (비)	1977년 8월 31일 (가)
그리스	1975년 11월 4일 (가)	
과테말라	2000년 11월 28일 (비)	2001년 7월 19일 (가)
기니	1962년 3월 21일 (가)	
온두라스	2012년 10월 1일 (비)	2012년 12월 18일 (가)
헝가리	2001년 11월 21일 (가)	2009년 5월 12일 (가)
아일랜드	1962년 12월 17일 (가)	1973년 1월 18일 (가)
이스라엘	1958년 12월 23일 (비)	
자메이카		2013년 1월 9일 (가)
이탈리아	1962년 12월 3일 (비)	

[†]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 행사를 재개함에 따라, 1997년 6월 10일, 1954년 무국적협약과 관련한 홍콩의 국제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책무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해 승계될 것임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였다.

부 록

카리바시	1983년 11월 29일 (승)	1983년 11월 29일 (승)
라트비아	1999년 11월 5일 (가)	1992년 4월 14일 (가)
레소토	1974년 11월 4일 (승)	2004년 9월 24일 (가)
라이베리아	1964년 9월 11일 (가)	2004년 9월 22일 (가)
리비아	1989년 5월 16일 (가)	1989년 5월 16일 (가)
리히텐슈타인	2009년 9월 25일 (비)	2009년 9월 25일 (가)
리투아니아	2000년 2월 7일 (가)	2013년 7월 22일 (가)
룩셈부르크	1960년 6월 27일 (비)	
마다가스카르 [‡]	[1962년 2월 20일 (가)]	
말라위	2009년 10월 7일 (가)	
멕시코	2000년 6월 7일 (가)	
몬테네그로	2006년 10월 23일 (승)	2013년 12월 3일 (가)
네덜란드	1962년 4월 12일 (비)	1985년 5월 13일 (비)
뉴질랜드		2006년 9월 20일 (가)
니카라과	2013년 7월 15일 (가)	2013년 7월 29일 (가)
니제르		1985년 6월 17일 (가)
나이지리아	2011년 9월 20일 (가)	2011년 9월 20일 (가)
노르웨이	1956년 11월 19일 (비)	1971년 8월 11일 (가)
파나마	2011년 6월 2일 (가)	2011년 6월 2일 (가)
파라과이		2012년 6월 6일 (가)
페루	2014년 1월 23일 (가)	
필리핀	2011년 9월 22일 (비)	
포르투갈	2012년 10월 1일 (가)	2012년 10월 1일 (가)

부
록

[‡] 1965년 4월 2일 사무총장이 접수한 통고에 의하여,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협약을 폐기하였으며, 협약 폐기는 1966년 4월 2일부터 발효하였다.

대한민국	1962년 8월 22일 (가)	
몰도바	2012년 4월 19일 (가)	2012년 4월 19일 (가)
루마니아	2006년 1월 27일 (가)	2006년 1월 27일 (가)
르완다	2006년 10월 4일 (가)	2006년 10월 4일 (가)
세네갈	2005년 9월 21일 (가)	2005년 9월 21일 (가)
세르비아	2001년 3월 12일 (승)	2011년 12월 7일 (가)
슬로바키아	2000년 4월 3일 (가)	2000년 4월 3일 (가)
슬로베니아	1992년 7월 6일 (승)	
스페인	1997년 5월 12일 (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999년 4월 27일 (승)	
스와질랜드	1999년 11월 16일 (가)	1999년 11월 16일 (가)
스웨덴	1965년 4월 2일 (비)	1969년 2월 19일 (가)
스위스	1972년 7월 3일 (비)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1994년 1월 18일 (승)	
트리니다드토바고	1966년 4월 11일 (승)	
튀니지	1969년 7월 29일 (가)	2000년 5월 12일 (가)
투르크메니스탄	2011년 12월 7일 (가)	2012년 8월 29일 (가)
우간다	1965년 4월 15일 (가)	
우크라이나	2013년 3월 25일 (가)	2013년 3월 25일 (가)
영국	1959년 4월 16일 (비)	1966년 3월 29일 (비)
우루과이	2004년 4월 2일 (가)	2001년 9월 21일 (가)
잠비아	1974년 11월 1일 (승)	
짐바브웨	1998년 12월 1일 (승)	

부록 IV - 유엔총회 결의안 발췌본

1994년 12월 23일 채택 유엔총회 결의안

A/RES/49/169, 1995년 2월 24일

49/169. 유엔난민기구

유엔총회는, …

20. 국가가 고등판무관이 1974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3274호(XXIX)하에서 무국적에 관한 국제문서의 가입 촉진과 온전한 이행을 포함하여 무국적 감소와 관련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을 촉구한다.

1995년 12월 21일 채택 유엔총회 결의안

A/RES/50/152, 1996년 2월 9일

50/152. 유엔난민기구

유엔총회는,

…

국적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 무국적이 실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와 관련하여 무국적의 방지와 감소 및 무국적자의 보호가 또한 잠재적 난민 상황의 방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14. 고등판무관이 국제적 보호의 제공과 예방조치의 추진이라는 규정상 임무 그리고 1974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3274호(XXIV)와 1976년 11월 30일 제31/36호하에서 맡은 책임의 일환으로 무국적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을 독려한다.

15. 관련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유엔난민기구가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¹과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²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며, 나아가 유관국에게 국적법의 준비 및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

부
록

¹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360, No. 5158

² 위의 글, Vol. 989, No. 14458.

2006년 12월 19일 채택 유엔총회 결의안

A/RES/61/137, 2007년 1월 25일

61/137. 유엔난민기구

유엔총회는, …

2. 유엔난민기구와 그 집행위원회가 수행해 온 중요한 업무를 환영하며, 이 맥락에서 위험에 처한 여성과 여아에 관한 결정문과 무국적의 확인, 방지와 감소 및 무국적자의 보호에 관한 결정문³을 채택하였음에 주목하며, 해당 결정문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관련 국내 공공정책을 통해 관련 체계와 기준의 점진적인 시행을 촉진함으로써 등 보호 의제⁴와 부합하는 국제적 보호 체계의 강화와 오늘날의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보호 책임의 충족 지원을 목표로 한다; …

4. 현재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⁵에 62개국이,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⁶에 33개국이 당사국임에 주목하며, 비당사국에게 해당 협약의 가입을 고려하도록 독려하고, 무국적자의 확인, 무국적의 방지 및 감소, 무국적자의 보호와 관련한 고등판무관의 업무를 주목하며, 유엔난민기구가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과 집행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해당 분야 업무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 …

³ 위의 글, 제III장, 제A절 및 제B절.

⁴ 위의 글, *Fifty-seventh Session, Supplement No. 12A*(제57차 회기, 참고자료 제12A호) (A/57/12/Add.1), 부속서 IV.

⁵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360, No. 5158.

[역주] 원문 본문 각주 번호 “7”을 “5”로 수정.

⁶ 위의 글, Vol. 989, No. 14458.

[역주] 원문 본문 각주 번호 “8”을 “6”으로 수정.

부록 V -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발췌

무국적의 방지와 감소 및 무국적자의 보호에 관한 결정

제78호(XLVI) - 1995

1995년 10월 20일

집행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국적에 대한 권리와 자의적으로 그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지하고,

국적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 무국적이 실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무국적의 방지와 감소 및 무국적자의 보호가 잠재적 난민 상황의 방지에 중요함을 강조하며,

(a) 고등판무관에게 기존에 위임한 무국적 난민에 대한 책임과 무국적 감소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엔난민기구가 국제적 보호의 제공과 예방조치의 추진이라는 그 규정상의 기능 및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제11조하에서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엔총회가 위임한 책임의 일환으로 무국적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을 독려한다; …

(c) 관련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유엔난민기구가 1954년 무국적자 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며, 나아가 유관국에게 국적법의 준비 및 이행에 관련한 기술적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

국제적 보호에 관한 일반결정

제95호(LIV) - 2003

2003년 10월 10일

집행위원회는, …

부
록

(v) 무국적자의 상황이 현 수용국이나 다른 종전의 상주국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불안정한 경우, 국가가 무국적 사례를 해결하고 재정착 장소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하여 유엔난민기구 와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무국적의 확인, 방지와 감소 및 무국적자의 보호에 관한 결정

제106호(LVII) - 2006

2006년 10월 6일

집행위원회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무국적 문제의 지속과 새로운 무국적 상황의 발생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유지 할 며, …

유엔총회가 고등판무관에게 위임한 무국적의 방지와 감소에 기여하고 무국적자의 보호를 증진할 책임을 재확인하고,

무국적의 방지와 감소 및 무국적자의 보호에 관한 결정문 제78호(XLVI)뿐만 아니라 결정문 제90호(LII), 제95호(LIV), 제96호(LIV) 및 장기화된 무국적 상황의 해결에 관한 결정문 제99호(LV)와 제102호(LVI)를 상기하며,

(a) 유엔난민기구가 정부, 기타 유엔 및 국제기구, 관련 지역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무국적의 확인, 방지 및 감소를 지원하고 무국적자의 보호 증진을 위한 목표에 맞춘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무국적 확인

(b) 유엔난민기구가 유관국 정부와 함께 그 영역 내에 거주하는 무국적 주민 및 국적이 불분명한 주민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 또는 재개하기 위하여, 특히 유엔아동기금과 유엔인구기금 나아가 유엔정무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개발계획 등 다른 유엔 기구와 출생등록에 관한 절차 및 주민 자료의 갱신 등 적절한 방식으로 국내 계획의 체계 안에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c) 유엔난민기구가 무국적 문제의 본질과 범위를 이해하고, 무국적 주민의 확인과 무국적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무국적 문제의 해결 전략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특히 무국적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적 없는 지역에서 관련 연구소나 전문가, 정부와 함께 연구를 수행 및 공유할 것을 독려한다.

(d) 무국적자 또는 국적이 불분명한 자에 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해당 통계를 유엔난민기구와 공유할 것을 독려하며, 유엔난민기구가 정보의 수집, 갱신 및 공유를 위한 더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e) 유엔난민기구가 격년으로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무국적자 관련 활동보고서에, 무국적의 규모에 관하여 국가가 제공한 통계 및 학술기관 및 전문가, 시민사회와 그 직원이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포함할 것을 독려한다.

(f) 유엔난민기구가 국가에 기술적 조언과 운영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무국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또한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유관국 간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을 독려한다.

(g) 국적과 무국적 분야에서 국제의회연맹(IPU)과 쌓아온 협력관계에 주목하며, 이에 더해 국가 및 지역 의회에서 국가 행정부와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와 역량 구축에 사용하는 2005년 국적과 무국적: 국회의원을 위한 편집(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을 주목한다.

…

부 록

무국적자 보호

- (s) 각국이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가입을 고려하고, 당사국은 유보의 해제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 (t) 유엔난민기구가 무국적자의 확인, 기록 및 지위 부여에 적절한 체계에 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배포하고,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 담당자의 훈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 (u)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비당사국이 자국 내 영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자를 국제인권법에 따라 대우하고, 적절한 경우,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의 귀화를 국내법에 따라 추진할 것을 고려하도록 독려한다.
- (v) 유엔난민기구가 관련 국가의 요청 시 무국적자의 보호와 원조에 기여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특히 무국적자가 무국적 상황을 시정하는 법적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맥락에서 적절한 경우 법률 상담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비정부단체와 함께 일할 것을 독려한다.
- (w) 국가가 무국적자를 무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하지 않고 국제인권법에 따라 처우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당사국은 협약 규정을 온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x) 유엔난민기구가 1954년 무국적협약의 당사국이 협약의 규정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의 이행에 관한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의 직원 및 기타 유엔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국적 관련 사안에 대한 훈련을 더욱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부
록

색인

숫자는 해당 단락의 번호를 의미

A

acquired rights 취득한 권리, 149

Ad Hoc Committee on Statelessness and Related Problems 무국적과 관련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125, 135

Admission/re-admission 가입, 입국/재입국, 20, 160

- in another State 타국에의 입국/재입국 117

- to State of former nationality 종전의 국적국으로의 재입국 161

acquisition/reacquisition of nationality 국적 취득/재취득, (nationality 국적, 참조)

acquisition/reacquisi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행정적 조치의 취득/재취득

- right to 행정적 조치에 대한 권리의 취득/재취득, 129

adoption 입양, 18, 92

age 연령, 102, 118, 121

appeal/review proceedings 불복절차, 23, 47-49, 76, 77

- right of appeal 불복할 권리, 71, 76

asylum-seekers 비호신청자, 66, 79, 112, 114, 132, 145

authorities 기관, (competent authority 관할 정부기관, 참조)

- consular, role of 영사기관의 역할, 28, 39, 40

- foreign, enquiries with and responses from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문의와 답변, 96-99

B

basic needs 기본적 필요, 146

benefit of the doubt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 원칙, 106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 최선의 이익, (child/children 아동, 참조)

birth certificates 출생증명서, 84, 121, 155

burden of proof 증명책임, 89, 90, 119

C

certificate 증명서

- birth 출생증명서, 84, 121, 155

- of naturalization 귀화증명서, 84

- of renunciation of nationality 국적포기증명서, 84

child/children 아동, 39, 71, 113

- best interests of 아동 최선의 이익, 119

- dependent 부양아동, 71

- right of every, to a nationality 모든 아동의 국적에 대한 권리, 122

- unaccompanied or separated 미동반 또는 분리된, 71, 119

- *UNHCR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 최선의 이익 결정에 관한 유엔난민기구 지침,

119

citizenship 시민권, 33, 34, (non-citizenship 비시민권, 참조)

civ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129, 157

- civil register 시민 등록부, 84
 confidentiality 비밀유지, 66, 79, 128
 competent authorities 관할 정부기관
 - enquiries with 관할 정부기관에의 문의, 41
 - identifying 관할 정부기관의 확인, 27-30
 - inconsistent treatment by 관할 정부기관의 비일관적 처우, 42-44
 - assessing nationality in the absence of evidence of the position of 관할 정부기관의 입장에 대한 증거 부재 시 국적 판정, 38
 - in automatic modes of citizenship acquisition or loss of nationality 자동적 시민권 취득 혹은 국적 상실에서, 34-36
 - in non-automatic modes of nationality acquisition and withdrawal 비자동적 국적 취득 및 상실에서, 31-33
 consular assistance/protection 영사의 지원/보호, 7, 40, 123, 167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55, 122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1961)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3, 4, 161, 부록 II
 - list of States Parties 무국적감소협약의 당사국 목록, 부록 III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0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2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 4, 6, 8, 12, 15, 52, 78, 82, 125-128, 130, 132, 135, 137, 145, 151
 - status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parallels between the 난민과 무국적자 지위의 유사성, 125, 127, 128
 - *Travaux Preparatoires* 교섭기록, 14, 125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1954)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3, 5, 6, 부록 I
 - list of States Parties 무국적협약의 당사국 목록, 부록 III
 - non-contracting States 무국적협약 비체약국, 122-124, 166
 - stateless persons in countries not bound by this treaty 무국적협약에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 있는 무국적자, 122, 166-168
 - treaty's object and purpose 무국적협약의 목표와 목적, 14, 51, 56, 91, 135, 147, 157
 country of origin 출신국, 79, 80, 101,
 courts 법원, 6, 49, 133, 138
 - right of access to 사법접근권, 129, 133, 138
 credibility 신빙성, 101-107
 crime 범죄
 - non-political 비정치적 범죄, 111
 - against peace 평화에 반하는 범죄, 111
 - against humanity 인도에 반하는 범죄, 111
 - war 전쟁범죄, 111

D

- de facto* stateless persons / statelessness 사실상 무국적자/무국적, 7, 8, 12, 123, 124, 167, 168
de jure stateless persons 법률상 무국적자, 7
 detention 구금, 112-115, 124
 - arbitrary 자의적 구금, 112, 115, 122, 141, 146, 166
 determination procedures, statelessness 무국적 심사절차
 - access to 심사절차에의 접근성, 68-70
 -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비밀유지의무, 66, 79
 - coordinating refugee status and statelessness determinations 난민 지위와 무국적 심사의 조율, 78-82
 - credibility issues 신빙성 문제, (credibility 신빙성, 참조)

- design and location of 심사절차의 설계와 위치, 62-67
- evidence 심사절차에서의 증거, (evidence 증거, 참조)
- group determination 집단 심사, 108-111
- individuals awaiting determination of statelessness 무국적 심사절차 결과를/무국적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 12, 16, 114, 132, 137, 144-146
- individuals in their "own country" "자국" 내에 있는 사람, 164, 165
- interview(er) 면접(관), 63, 71, 73, 80, 84, 100, 104, 105, 119, 121
- procedural guarantees/safeguards 심사의 절차적 보장/보호장치, (procedural guarantees/safeguards 절차적 보장/보호장치 참조)
- right to be heard 의견을 제출할 권리, 71
- rights on a gradual, conditional scale 점진적, 조건적 척도에 따른 권리, 132-139
- where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does not apply 1954년 무국적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무국적 심사, 122, 123
- diplomatic protection 외교적 보호, 7, 13, 54, 123, 167
- disabilities, persons with 장애/장애인, 120
- discrimination 차별, 104, 120, 121
 - based on the lack of nationality status 국적이 없음을 근거로 한 차별, 140
 - against a particular group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37
 - racial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 인종차별 55, 164
 - women 여성에 대한 차별, 55, 121, 122
- discriminatory practices 차별적 관행, 103
- discriminatory treatment 차별적 처우, 164
- dignity 존엄, 52, 146, 157

E

- education 교육, 102, 121, 129, 133
- employment, right to 고용, 근로의 권리, 127, 129
 - self-employment 자영업, 129, 134, 145
 - gainful 유급직업, 129
 - wage-earning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129, 146
- error or bad faith, nationality acquired in 착오 또는 악의, 착오 또는 악의로 취득한 국적, 45, 46
- ethnic group 민족/민족적 집단, 49, 52
- ethnic identity 민족적 정체성, 102
- ethnicity 민족, 103
- evidence 증거
 - assessment of 증거의 평가, 83-107
 - competent authorities, assessing nationality in the absence of evidence of the position of 관할 정부기관의 입장에 대한 증거 부재 시 국적 판정, 38
 - of competent authorities in automatic modes of citizenship acquisition or loss of nationality, evaluating 자동적 시민권 취득 혹은 국적 상실에서 관할 정부기관의 증거 평가, 34-36
 - of competent authorities in non-automatic modes of nationality acquisition and withdrawal, evaluating 비자동적 국적 취득 및 상실에서 관할 정부기관의 증거 평가, 31-33
 - passport (증거로서의) 여권, 36, 38, 40, 42, 44, 95
 - types of 증거의 종류, 83-86
- exclusion 배제(조항), 111
- Executive Committee, UNHCR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 Conclusion 44 (XXXVII) of 1986 on deten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난민과 비호신청자의 구금에 관한 1986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44호(XXXVII), 112

- Conclusion 96(LIV) on the return of persons found not to b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관한 2003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96호(LIV), 161
- Conclusion 103 (LVI) of 2005 on 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통한 국제적 보호의 제공에 관한 2005년 결정문 제103호(LVI), 15, 79
- Conclusion 106 (LV1) of 2006 on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무국적의 확인, 방지와 감소 및 무국적자의 보호에 관한 2006년 유엔난민기구 결정문 제106호(LV1), 112
- Conclusions Adop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1975-2009 (Conclusion No.1 ~ 109).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집행위원회 채택 결정문, 1975-2009 (결정문 제1-109호), 8
expulsion 추방, 129
 - of an irregular migrant 비정규 이주민의 추방, 112
 - order 추방명령, 135
 - protection against 퇴거/추방으로부터의 보호, 72, 127, 134, 145

F

family 가족

- life 가족생활, 149, 163
- links 가족관계, 163
- member(s) 가족구성원, 71, 101
- unity 가족결합, 151
- unlawful or arbitrary interference with 가족생활에 대한 위법한 또는 자의적인 간섭, 163

fraud or mistake in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국적 취득 시 기망이나 착오, 46

fraudulent 부정, 거짓된

- acquisition of documents 문서의 부정 취득, 46
- application 거짓된 신청, 45
- documentation 거짓 문서, 112
- passport 위조 여권, 95

freedom of movement 이동의 자유, 129, 134, 135, 145

G

gender 성별, 118, 121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유엔총회 결의안

- 31/36 of 1976 1976년 유엔총회 결의안 제31/36호, 4
- 3274 (XXIX) of 1974, 1974년 유엔총회 결의안 제3274호(XXIX), 4
- Resolution 50/152 of 1995 1995년 유엔총회 결의안 제50/152호, 4
- Resolution 61/137 of 2006 2006년 유엔총회 결의안 제61/137호, 4, 116

색
인

H

habitual residence 상주, 1, 18, 54, 58, 81, 84, 92, 132, 138, 139, 152, 154, 157, 158, 162

Hague 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1930) 1930년 국적법 충돌의 특정 문제에 관한 헤이그 협약, 23

healthcare, right to access to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150

host country 수용국, 126, 153, 163

housing 주거/주택, 129, 136

human rights 인권

- law, international 국제인권법, 11, 112, 122, 140-143, 147, 149, 164, 166
- obligations, international 국제인권상의 의무, 53
- protection 인권 보호, 52
- of stateless persons 무국적자의 인권, 9, 11, 14, 51, 140, 142, 146
- treaties 인권조약, 6, 55, 131, 141, 143, 151
- treaties, prohibitions in 인권조약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55

Human Rights Committee, United Nations 유엔 자유권위원회, 1, 58, 112, 135, 140, 142

I

identification documents 신분증명서, 38, 40, 44, 57, 84, 112, 120, 121

identity 신분

- cards 신분증, 44, 84
- papers 신분증명서, 129, 133, 143, 145, 166

immigration documents 이민 관련 문서, 84

insecurity 불안정, 147, (security 안전, 참조)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standards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136

International Commission on Civil Status 국제시민적지위위원회, 97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1, 12, 58, 112, 122, 135, 140-143, 161, 164, 166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국제인권법, (human rights 인권, 참조)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국제법위원회, 13

-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초안 및 해설, 13, 54
- Articles on the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es 국가승계에 관련한 자연인의 국적에 관한 규정, 34

international protection 국제적 보호, 8, 15, 78, 135, 157, 161

interpreters 통역사, 119

- of the same sex 성별이 같은 통역사, 121

interviewers 면접관, 119, 121

interviews 면접, 63, 71, 73, 80, 84, 100, 104, 105, 119, 121

- right to an individual 개별적 면접에 대한 권리, 73

- with a decision-making official, right to an 의사결정 담당자와 면접할 권리, 71

irregular migration, criminalization of 비정규 이주의 범죄화, 112

J

judicial review 사법심사, 77, 112, (appeal/review proceedings 불복절차, 참조)

jurisdiction 관할권, 8, 12, 27, 52, 53, 85, 95, 132, 133, 145

jurisprudence of national courts 국내법원 판례, 6

jus sanguinis 혈통주의, 35

jus soli 출생지주의, 35

L

labour 노동, 129, 136

law(s) 법(률)

- international 국제법, 7, 9, 12, 17, 19-21, 52, 55, 56, 124, 142, 161
- international human rights 국제인권법, (human rights 인권, 참조)
- “law”, meaning of “법률”의 의미, 22
- national 국내법, 11, 135, 140, 164
- lawfully in 합법적으로 있는, 132, 134, 135, 143, 145
- lawfully staying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132, 136, 137, 150
 - “Lawfully Staying” - A Note on Interpretation “합법적 체류” - 해석에 관한 해설, 135, 137
- legal representatives 법률대리인, 114, 119
- long-term residence 장기 거주, 1, 58, 65, 142, 163, 164

M

- marginalization 주변화, 11
- marriage 혼인, 18, 92
 - certificate 혼인증명서, 84
 - to a foreigner 외국인과 혼인, 55
- material elements 중요한 요소, 107
- medical 의료 (healthcare 의료서비스, 참조)
 - certificates/records 의료 증명서/기록, 84
- membership 구성원 신분
 - of a religious, linguistic or ethnic group 종교적, 언어적, 민족적 집단의 구성원 신분, 52
- migrants 이주민, 112
- migratory 이주
 - context, individuals in a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개인, 12, 58, 108, 117, 144-163
 - movements, mixed 복합 이주의 상황, 10
 - situations 이주 상황, 1
- military service record 병적증명서, 84
- Montevideo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33)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19

N

- national law 국내법, 11, 135, 140, 164
- nationality 국적
 - acquisition/reacquisition of 국적의 취득/재취득, 7, 27, 44, 49, 117, 155, 156, 159-161
 - acquired in error or bad faith 착오 또는 악의로 취득한 국적, 45, 46
 - automatic and non-automatic modes of acquisition or withdrawal of 자동적 및 비자동적 방식의 국적 취득 또는 상실, 25, 26, 31-37
 - concept of 국적의 개념, 52-56
 - deprivation of 국적의 박탈, 25, 50, 55, 158-160
 - arbitrary 국적의 자의적 박탈, 164
 - laws 국적법, 1, 3, 23, 24, 29, 37, 49, 52, 61, 71, 83, 85, 86, 92, 102, 103, 116, 149, 158, 164
 - loss of 국적의 상실, 1, 25, 44, 51, 55, 158-160
 - renunciation of 국적의 포기, 25, 50, 84, (voluntary renunciation 자발적 국적 포기, 참조)
 - right of option to acquire 국적을 취득할 선택권, 155
 - right to a 국적에 대한/국적을 가질 권리, 58-61, 161
 - withdrawal of 국적의 상실, 44, 51, 55, 56
 - voluntary renunciation of 국적의 자발적 포기, (voluntary renunciation 자발적 포기, 참조)
 - acquired in error or bad faith 착오 또는 악의로 취득한, 45

- verification procedures 국적 검증 절차, 60, 61
- naturalization, certificate of 귀화증명서, 84
- non-citizenship 비시민권, 시민권이 없음, 33, 140, (citizenship 시민권, 참조)
- non-refoulement 강제송환의 금지, 강제송환으로부터의 보호 127, 128
- non-State actors 비정부행위자, 86

P

- parentage, proof of 부모의 입증, 35
- passport 여권, 36, 38, 40, 42, 44, 57, 95, 155, (evidence 증거, 참조)
- penalties for illegal entry 불법 입국에 대한 처벌, 127
- persecution, well-founded fear of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 52, 57, 81, 91, 96
- prima facie*, statelessness status 일응 추정상 무국적 지위, 109, 110
- privacy 사생활, 149, 163
- procedural guarantees/safeguards 절차적 보장/보호장치, 64, 68, 71-77, 143
 - specific groups, additional 추가적인 보호장치, 118-121
- proof 증명/입증
 - of nationality 국적의 증거, 44, 84
 - of parentage 부모의 입증, 35
 - of place of birth 출생지의 입증, 35
- property rights 재산권, 129
- proportionality 비례성, 112, 113, 149
- public order 공공질서, 112
- public relief 공적 구호, 129, 136

R

- race 인종, 53, 55
- refoulement 강제송환, (non-refoulement 강제송환의 금지, 참조)
- refugee 난민
 - definition 난민 정의, 52, 91
 - *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난민 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편집과 지침, 81, 91, 100, 107, 151
- refugee law, international 국제난민법, 12
- religion/religious 종교/종교적, 52, 103, 121, 133
- renunciation 포기, 84 (nationality, renunciation of 국적의 포기, 참조)
- residence 거주, (habitual residence 상주, 참조)
 - permits 거주 허가, 84, 135, 137, 139, 147-150, 154, 159, 160, 163, 168
 - right to 거주의 권리, 147-152
- return 귀환, 154, 157, 158, 161, 162, 167, 168
 - to the State of nationality 국적국으로의 귀환, 7, 123
 - to their country of nationality 국적국으로의 귀환, 123
- review 불복, (appeal/review proceedings 불복절차, 참조)
- right 권리
 - to be in a country 국내에 머물 권리, 57
 - civ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129, 157
 - of entry/to enter one's own country “자국” 입국에 관한 권리, 자국 입국의 권리, 142, 161
 - of entry, re-entry and residence in the State's territory 해당 국가 영역에 입국, 재입국 및 거주할 권리, 53

-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12
 - to remain 체류할/거주할 권리, 142, 147
 - to remain in his or her “own country” “자국”에 체류할/거주할 권리, 12, 164, 166
- rule of law 법치, 47, 49

S

- security 안전, 52, 112, 157, (insecurity 불안정, 참조)
- self-determination, right to 민족자결권, 19
- social assistance, right to access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권, 150
-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129, 136
- standard of proof 증명기준, 91-93
- standard/s of treatment 처우의 기준, 3, 8, 128-130, 144, 145
- state 국가
 - “State”, what is a, “국가”란 무엇인가? 19-21
 - “by any State”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18-21
- stateless person / statelessness, definition 무국적자/무국적의 정의 (무국적협약 제1조 제1항), 7, 8, 13, 14-22, 24, 28, 37, 39, 45, 47, 50-54, 56, 88, 109, 111
- sworn oral testimony 선서 후 구술 증언, 84

T

- travel documents 여행증명서, 84, 112, 129, 143, 166
 - right to 여행증명서에의 권리, 136, 150, 160
- territory 영역
 - birth on 영역 내에서의 출생, 18, 26, 34, 49, 54, 61, 92, 161
 - presence in 영역 내에서의 현존, 132, 133, 137, 145

U

- unaccompanied children 미동반 아동, (child/children 아동, 참조)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유엔난민기구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 Expert Meeting - The Concept Of Stateless Persons under International Law (“Prato Conclusions”) 유엔난민기구, 전문가회의 - 국제법상 무국적자의 개념 (“프라토 결정문”), 4, 123, 167
 - Executive Committee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 참조)
 - mandate 유엔난민기구 임무, 4, 116
 - responsibilities of 유엔난민기구의 책임, 4
 - role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116
- United Nations 유엔
 - Ad Hoc Committee on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난민과 무국적자에 관한 유엔 특별위원회, 135
 - Ad Hoc Committee on Statelessness and Related Problems 무국적과 관련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125, 135
 -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난민고등판무관, 111
 - Human Rights Committee 유엔 자유권위원회, 1, 58, 112, 135, 140, 142
 - Human Rights Committee's decisions in *van Alpen v Netherlands* 유엔 자유권위원회 *van Alpen v Netherlands* 결정, 112
 - Security Council,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분쟁과 분쟁 이후 사회에서의 법치와 전환기 정의: 사무총장 보고서, 47
 -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non-citizens 유엔 비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140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세계인권선언, 14, 164
-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112

V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14
voluntary renunciation of nationality 자발적 국적 포기, 51, 153, 158-162
vulnerable groups 취약한 집단/취약집단, 3, 140

W

war crime 전쟁범죄, 111
welfare 복지, 129
women 여성, 121

- asylum-seekers 여성 비호신청자, (asylum-seeker 비호신청자, 참조)
- right of, to equal rights/treatment 동등한 권리를 가질/처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 55, 122

work, right to 근로의 권리, 136, 150, 160